
2023년도 사업별 설명자료

2023. 1.

해양경찰청

2. 세 입

(1) 토지대여료	
51 - 51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토지대여료	7	12	12	12	12	-	-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세입 개요

- 해양경찰청 소속관서 소관 국유재산(토지) 사용료

다. 2023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2예산	12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2023예산	12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2) 건물대여료

51 - 512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건물대여료	71	298	298	298	318	20	6.7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세입 개요

- 해양경찰청 소속관서 소관 국유재산(건물) 대여료

다. 2023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2예산	298,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2023예산	318,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3) 기타관유물대여료

51 - 51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기타관유물 대여료	2	5	5	5	5	-	-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나. 세입 개요

- 기타 국유재산(관유물) 사용료

다. 2023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2예산	5,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2023예산	5,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4)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수입	-	87	87	87	87	-	-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20조(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

- ①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보관금이나 이자가 있을 때에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보관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통지해야 한다.

1. 보관금명, 보관금액 등 국고귀속 대상 보관금에 관한 사항
2. 국고귀속 예정일
3. 환급절차 등 환급에 대한 안내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②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이 경과 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관금과 그 이자를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및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다. 2023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2예산	-	해당사항 없음
2023예산	87,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54-545)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5) 벌금및과료
56 - 56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벌금및과료	1	1	1	1	1	-	-

가. 법적 근거

○ 경범죄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기초질서 등 위반행위에 대한 법령에 의하여 부과하는 범칙금

다. 2023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2예산	1,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2023예산	1,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6) 과태료
56 - 56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과태료	193	183	183	183	183	-	-

가. 법적 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제17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 제18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 제24조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제36조를 위반하여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 제38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자
 -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 제44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수상레저사업자
 - 제50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상레저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공간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자

4.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의 사본 및 연료유건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료유공급서 사본 및 연료유건본을 제공한 자

5.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제조치의 협조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7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관리한 자 및 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10. 제88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1.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2.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유지·작동한 자

2.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 외의 자에게 인도한 자

3.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한 자

4. 제4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작동한 자

5.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해역에서 주기관·보조기관 또는 보일러를 사용하여 물질을 소각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물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배출물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인받은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자
4. 제3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6의2. 제32조제3항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6의3. 제32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등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게 하지 아니한 자
- 6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
- 6의5.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에 관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6의6.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업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6의7. 제42조제4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 6의8.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8의2. 제44조제5항에 따른 연료유전환절차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 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11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 받은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
12. 제5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14. 제7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15. 제7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제7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자
 18.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 제12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제13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7조에 따른 일시정지나 면허증·신분증의 제시명령을 거부한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제35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수상레저기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해사안전법 제110조(과태료)**

- ① 제37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변조·훼손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8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확인·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
 4.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7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제도를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3항제4호 후단에 따른 유조선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제2항(제5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합병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5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6조제2항에 따른 표시나 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자
1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1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
14.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5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또는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아니한 자
- 15의3.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
- 15의6. 제41조의3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7. 제4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
19. 제49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2.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96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3. 제78조,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에 따른 등화와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4.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에 따라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등을 갖추어 두는 것과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5. 제106조제17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3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제10호,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

1항제7호, 제23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5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한 자

2. 제13조제2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이 부과·징수한다.

○ 선박의 입찰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적이나 사이렌을 울린 자

22. 제48조제1항에 따른 출석·진술이나 서류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보고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제20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4. 제13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어선법 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2. 제1항제3호·제4호의 경우: 해양경찰청장

○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에 따른 이동 및 대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구조요청을 받았을 때 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나. 세입 개요

- 법 집행기관인 각 해양경찰서에서 개별법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 기초질서 등 위반행위에 대한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태료 등의 수입

다. 2023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2예산	183,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2023예산	183,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7) 징계부과금

56 - 564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징계부과금	8	14	14	14	14	-	-

가.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과금)

-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과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과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⑤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징계부가금)

- ① 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②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 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 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⑥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금품 및 향응수수(授受), 공금 횡령·유용 비위의 경우 징계처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유용액등의 5배이내 징계부과금 부과

다. 2023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2예산	14,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2023예산	14,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8) 과징금
56 - 565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과징금	93	70	70	70	75	5	7.1

가. 법적 근거

○ 수산업법 시행령 제82조(과징금의 용도)

① 행정관청은 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수리
2.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지도·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단속·수사 담당공무원의 지도·단속 근무수당 및 수사비
4.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경비
5. 불법어업지도·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6.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몰수한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의 관리 및 처리 비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관청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따른다.

1. 제1항제3호의 수당 및 수사비: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2. 제1항제5호의 보조금 중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의2(과징금 처분)

① 관할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나. 세입 개요

-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징금 등
 - 수산관계법령 위반 단속 보조금(관할지자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과징금

다. 2023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2예산	70,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2023예산	75,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9) 변상금
57 - 57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변상금	1,826	1,619	1,619	1,619	1,630	11	0.7

가. 법적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안의 자갈·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름이 하나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해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기름이 둘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 이 경우 기름이 둘 이상의 시·도지사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할 시·도지사로 한다.
 3. 군사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해안에 대한 방제조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
-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방제에 사용되는 자재·약제,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4항에 따라 부담하게 한 비용의 징수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이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나. 세입 개요

- 국유재산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해양오염 사고시 국가가 선조치에 따른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 등

다. 2023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2예산	1,619,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감안하여 편성
2023예산	1,630,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10) 위약금

57 - 572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위약금	108	389	389	389	480	91	23.3

가.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6조(지체상금)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다. 2023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2예산	389,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감안하여 편성
2023예산	480,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11) 가산금

58 - 58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가산금	7	4	4	4	4	-	-

가. 법적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중앙관서의장 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일반재산의 경우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등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2.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납부의무 불이행(과태료 미납 등)에 따른 가산·연체금

다. 2023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2예산	4,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2023예산	4,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12)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 수입	1,448	1,116	1,116	1,116	1,116	-	-

가. 법적 근거

- 보조금관리법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국고금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

출납이 완료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국고보조 및 위탁사업 정산 집행잔액, 과오지급금 회수, 호봉재확정 관련 급여지급금 환수 등

다. 2023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2예산	1,116,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2023예산	1,116,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13) 면허료및수수료
65 - 65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면허료 및 수수료	528	399	399	399	410	11	2.8

가. 법적 근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4조(응시수수료)

-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1만원
 2. 경사 이상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7천원
 3.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7천원
 4.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5천원
-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일 3일 이전까지 접수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수수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 제11조에 따라 면허증의 발급, 재발급,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4.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변경등록·말소등록 등을 신청하려는 자
 5.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받으려는 자
 - 5의2.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 5의3. 제31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검사를 받으려는 자

7. 제39조와 제42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등을 신청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 등에 내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이 면허시험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2의2. 제37조제6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수상레저기구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검사대행자가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검사대행자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검사대행자의 수입으로 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의7(자격시험 수수료)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9(자격시험 수수료)

① 영 제30조의7에 따른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수수료 등)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 해양환경측정 기기의 형식승인·검정, 자재·약제의 형식승인·검정 및 형식승인대상의 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성능시험 및 검정에 대하여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표 32와 같다.

②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전자화폐,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2. 정부가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현금,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나. 세입 개요

- 경찰공무원등 채용시험 인터넷접수 응시 수수료
- 수상레저 면허, 수상구조사 관련 응시료, 갱신료 등 수수료
-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수수료

다. 2023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2예산	399,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2023예산	410,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14) 기타잡수입

69 - 69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기타잡수입	481	792	792	792	792	-	-

가.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36조(매각)

-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 국고금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불용결정품 매각대금(고철, 폐유 등)
-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기초체력단련장 이용료)

다. 2023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2예산	792,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2023예산	792,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15) 기계기구매각대
71 - 712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기계기구 매각대	28	31	31	31	31	-	-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제40조(용도폐지)

- ①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유재산법제48조(매각)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문화시설·공원 등 공공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특별회계나 기금 소관 재산으로 그 회계나 기금의 설치목적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재산의 위치·규모·형태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 국유재산법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용도 폐지된 공용차량 등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용중인 인터넷 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하여 전자입찰 매각대금(차량, 불용물품 등)

다. 2023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2예산	31,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2023예산	31,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16) 기타고정자산매각대

71 - 71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기타고정자산 매각대	426	224	224	224	230	6	2.7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제40조(용도폐지)

- ①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유재산법제48조(매각)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문화시설·공원 등 공공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특별회계나 기금 소관 재산으로 그 회계나 기금의 설치목적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재산의 위치·규모·형태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 국유재산법제50조(매각대금의납부)

-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국유재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용중인 인터넷 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한 매각대금(함정등 매각 비용)

다. 2023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2예산	224,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2023예산	230,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3. 세 출

사 업 명						
(1)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300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안녕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1	300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활동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5,001	4,979	4,943	4,805	4,732	△247	△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파출소(97개소) 및 출장소(232개소) 구조물품 지급 및 구조 역량 강화훈련 등을 통해 연안안전사고예방
- (파출소 및 출장소 시설관리) 연안구조정 계류시설, CCTV 등 파출소(97개소) 및 출장소(232개소) 시설·장비 유지보수

-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연안해역 사고다발지역 예방순찰을 통해 연안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연안안전지킴이(208명)을 선발하여 활동비, 피복, 활동물품 등 지급
- (민간대행신고소 운영) 어선 출·입항 신고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대행신고소장(21개소) 대상 보상금 지급
- (연안교통안전관리) V-PASS 유지보수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 및 유·도선 기동점검단 운영, 음주측정기 관리 등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
- (유도선 현대화) '16년 유·도선 선령기준 제도 도입에 따라 노후 유·도선 대체건조 지원
- (연안안전관리) 출입통제표지판 등 연안해역 시설물 점검을 통해 연안안전 예방체계 구축 및 연안안전문화 확산
- (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 운영) 해양경찰 기술정책 기획연구를 통해 해양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해사안전법」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

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하 “운항자”라 한다) 또는 제1항에 따른 도선을 하는 사람(이하 “도선사”라 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출입항의 신고)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수난구조의 관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조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조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조는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이 제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져서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建造)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앞선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5. 4월 속초 황만호 월선 관련 음주측정 장비 보강(음주운항사고 사전 예방 필요)
- '06년 인천·속초 지역 어선 대상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시범운영 결과 어민 및 국회 국정감사 정책제언, 국민 권익위·합참 확대 구축 요청으로 V-PASS 시스템 도입
- '14. 5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연안안전관리
- '16. 2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으로 유·도선 선령기준 제도 도입
- '17. 12월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이후 해경의 현장 구조역량 강화토록 대통령 지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6,702	5,260	5,184	4,943	4,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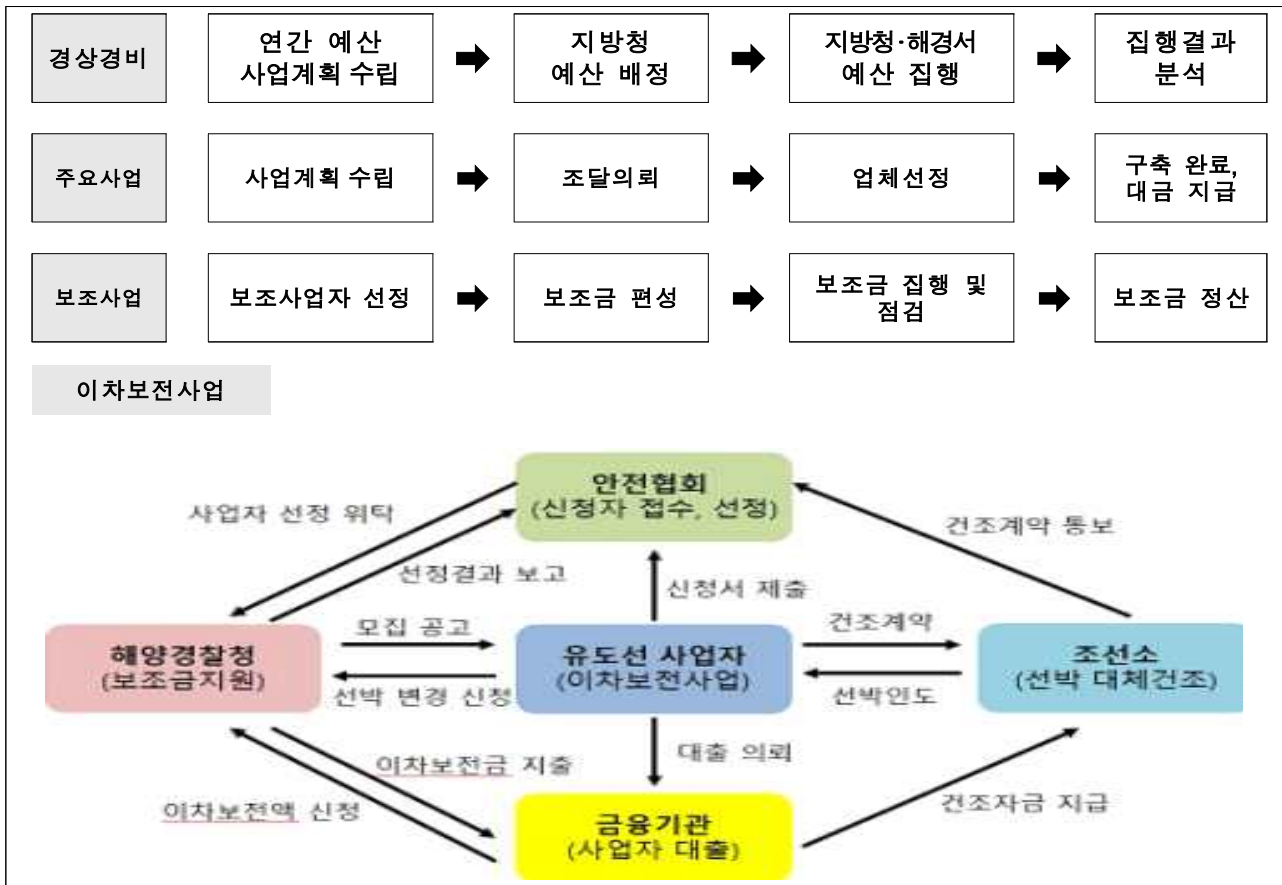
- 기타: (보조사업) 지역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활동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23년 연안안전지킴이 208명 선발하여 운영기간(5~10월)동안 월 활동비 522천원 지급 등을 위해 총 778백만원 편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종사자, 어민, 연안활동객, 연안안전지킴이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연안안전 지킴이 운영	보조	(사)한국 해양안전 협회	778	100%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연안 안전지킴이 위촉),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 금의 교부 결정)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 수색구조역량강화 (300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1	301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활동	수색구조역량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수색구조역량강화	10,910	11,261	11,137	12,464	12,464	1,203	1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구조장비 확충) 중앙해양특수구조단·해양경찰구조대 등 해양경찰 구조세력의 임무수행을 위한 구조장비 구매·도입을 지원하는 것임
- (구조역량 강화) 해양경찰 구조세력의 신속대응·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수색구조합동훈련, 구조장비 유지보수 등을 통해 구조 전문성 확보하고자 함
- (민간구조 협력) 넓은 바다에서 해경세력만으로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에 한계 발생, 민간해양구조대 등 민간구조자원의 지원을 통해 구조협력체계 구축하는 것임
- (수색구조 운영) 중앙·광역 구조본부, 수색구조 사무실·해양경찰구조대, 중앙해양

특수구조단 등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지원하는 것임

- (중특단 시설운영)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훈련시설 준공에 따른 훈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수상구조사)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12(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② 추진경위

- (수색구조역량강화) 해양현장의 구조·구난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효율적이고 신속한 선진 해양사고 대응체계 구축
- (정부조직법 공포·시행) 국민안전처장관 소속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공식출범 ('14. 11. 19.)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역대(동해·서해) 신설 ('15. 11. 30.)
- (수상구조법 개정) 민간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인증 전문 자격제도 “수상구조사” 신설('15. 7. 24.)
-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
◦ 관리과제3. 과학적 해양종합안전망 구축과 신항안보 대처
- (인접국간 협력) 인접국간 수색·구조 훈련 등 국제 협력 강화로 재외 국민 보호
- (SAR 협약 : Search and Rescue) 수색 및 구조의 협력과 조정을 위해 국가 간 협력 권장
- (SOLAS 협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해상 인명 안전 협약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5,065	8,509	9,057	11,137	12,464

- 기타: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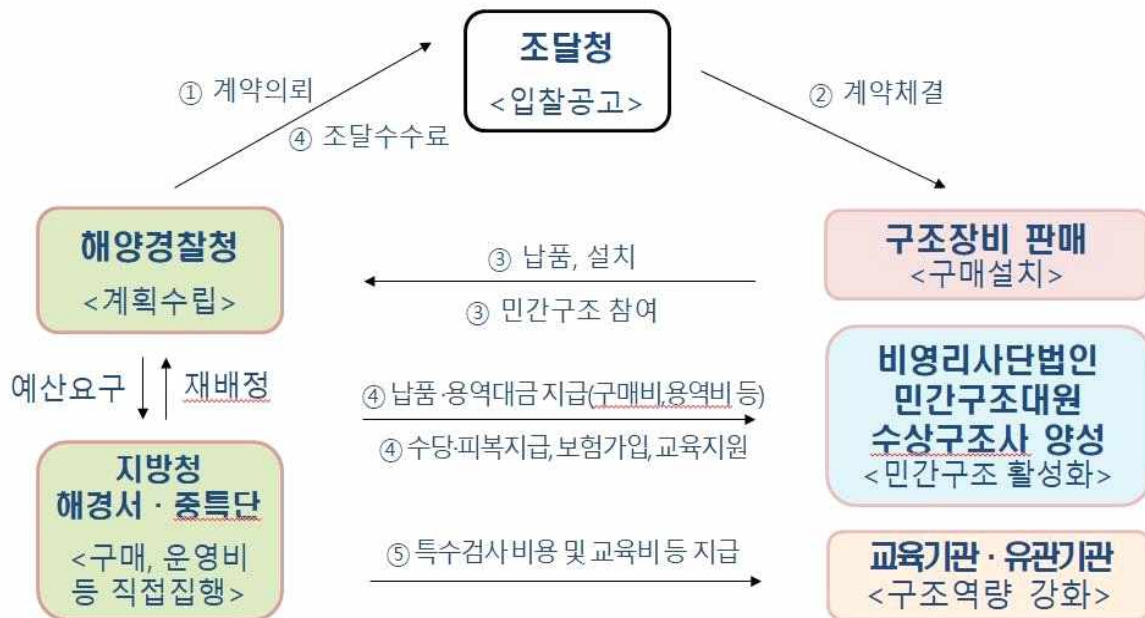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비영리사단법인
- 사업 수혜자 :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간구조 협력	보조	(사)한국 해양구조 협회	1,345	100%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사업 집행절차

기본 사업	사업계획 수립	→	조달의뢰	→	업체선정	→	구축 완료, 대금 지급
일상 경비	연간 예산 사업계획 수립	→	지방청 예산 배정	→	지방청·해경서 예산 집행	→	집행결과 분석
민간 보조	연간 예산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자 교부	→	보조사업자 예산 집행	→	집행결과 보고



- 민간구조 협력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관련근거
해양경찰청 (1,345백만원)	=> (1,345백만원)	(사)한국해양구조협회 (1,345백만원)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사 업 명
(3) 수상레저관리 (300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1	302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활동	수상레저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2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수상레저관리	1,272	977	946	1,283	1,240	263	2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의 체계적인 관리
- (수상레저안전관리) 수상레저 사고예방을 위한 수상레저 활동자 및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수상레저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조종면허) ①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③일반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제2급 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④조종면허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의2(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수상레저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정(법률 제5910호, '99.2.8)
 - '00년도 조종면허시험 시행, '06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안전검사, 보험의무가입
 - '08년도 시도지사 및 해경서장에게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을 내용으로 법 일부 개정
 - '11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선내기 레저보트 등록·검사업무 이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대상 확대
 - '16년도 조종면허시험 면허취소 대상 범죄 구체화 및 주취운항 근거 법률상향
 - '19년도 조종면허 반납사유 개정,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추가,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사유 추가, 대행기관 및 대행업무 종사자부분 개정
 - '22년도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안 및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법」 제정안 공포(6.10), '23. 6. 11. 시행 예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924	969	1,304	946	1,240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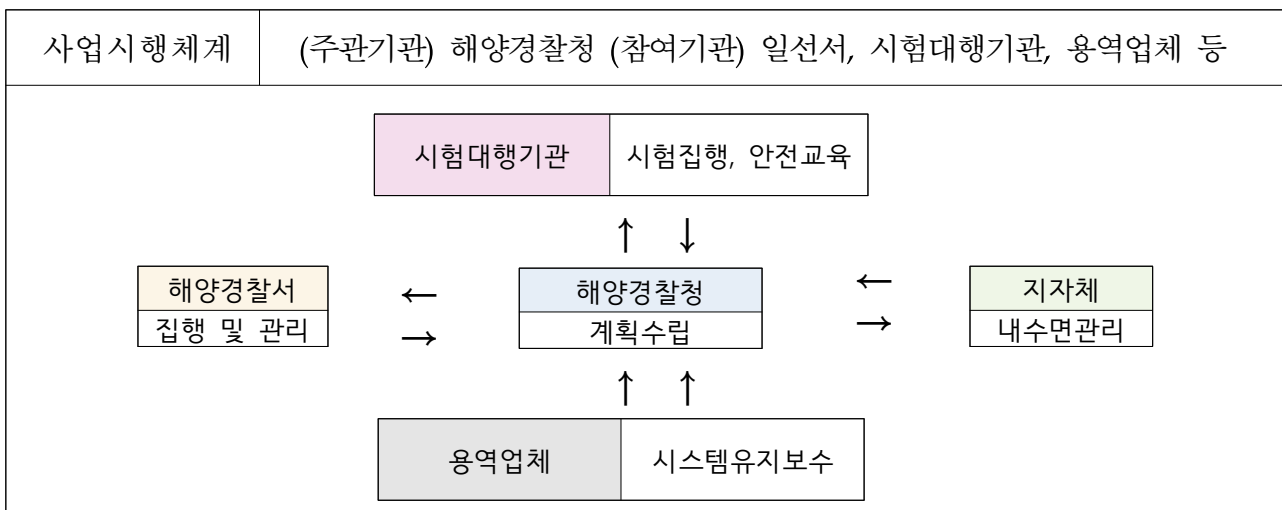
- 해양경찰청 및 소속 25개 관서 조종면허시험 및 안전관리 업무
- 서울·경기 등 총 32개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실기시험 집행 및 안전교육 실시

- 조종면허 PC시험장 21개소 상시 조종면허 필기시험 집행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 : 35,747대
- 수상레저사업장 현황 : 985개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 연안구조장비도입 (300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안녕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2	300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인프라	연안구조장비도입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연안구조장비도입	3,921	11,333	11,333	11,909	11,344	11	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명구조장비) 「週 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해양여가 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연안 해역 안전한 해양활동 보장 및 신속한 해상재난 구조능력 제고를 위해 파출소(97개소), 출장소(232개소), 중특단 및 구조대(20개소) 임무수행에 필요한 연안구조정 및 구조정 도입
- (파출소 화재보호장비) 화재사고 초기 대응역량 강화 및 구조대원 안전확보를 위해 파출소 연안구조정(97척)에 화재보호장구(ABA, 특수방화복) 도입

- (계류시설) 파출소(97개소), 출장소(232개소), 중특단 및 구조대(20개소) 등 현장 구조 세력의 신속 출동을 위한 전용 계류시설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① 구조본부의 장은 해수면에서 수난구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추진경위

- '05년 연안해역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제33회 국무회의 시 대통령 보고, 사업추진
- '14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현장 대응능력 강화 과제
- '17. 12월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이후 해경의 현장 구조역량 강화 대통령 지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9,470	15,985	3,900	11,333	11,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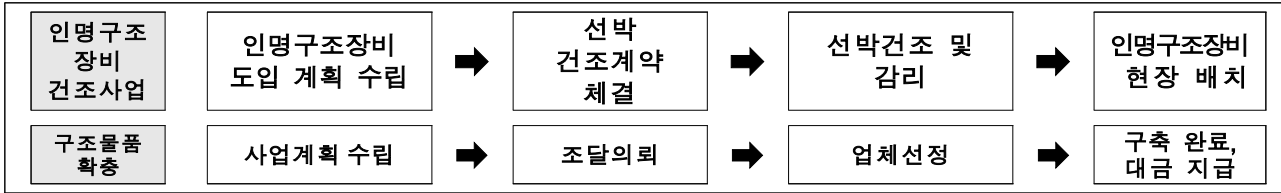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5) VTS구축운영 (300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경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부문명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2	301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인프라	VTS구축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VTS구축운영	32,261	36,583	36,547	24,386	22,757	13,826	37.8

나. 사업설명자료

- 1) 사업목적·내용 : 항만 및 연안해역의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선박교통관제(VTS)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VTS구축) VTS 시스템 미설치 항만 및 연안해역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제센터, 레이더, 운영시스템, 통신장비 등 시설장비를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
 - (VTS확충) 레이더 음영구역이나 탐지범위 밖 해역 등 관제취약지역에 시설장비를 증설하고 인근 관제센터에서 확대 운영하는 사업

- (VTS개량) 내용연수가 경과한 레이더, 운영시스템, 통신장비 등 노후되고 성능이 저하된 시설장비를 현대식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
- (VTS유지관리) 전국 VTS의 안정적인 관제운영 및 시설장비 성능유지를 위해 유지 보수비, 운영비, 취약점 분석·평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1조(관제시설의 설치·관리)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② 추진경위

- 부총리 주재 해양오염방지대책 회의에서 ‘해상교통관제장비의 현대화’ 추진계획 협의(‘90.8.2)
-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설치, 운영개시(‘93.12)
 - * (‘93)포항, (‘96)여수(광양)·울산, (‘98)부산·인천·마산·대산·평택, (‘99)동해·군산·목포·제주, (‘04)완도, (‘05)부산신항, (‘06)진도연안, (‘11)경인, (‘12)여수연안, (‘14)통영연안, (‘18)경인·태안연안, (‘22)서해권(목포·군산) 광역 VTS 등 구축
- 총리 주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설치계획’ 확정(‘94.2.8)
- ‘해양오염종합방지대책’ 중점추진 과제(‘95.10, 당정회의, 총리실)
- 총리실,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를 ‘특정과제’로 선정, 평가실시(‘08.3~7)
- 연안VTS 확대 구축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舊 해양경찰청으로 이관 결정(‘08.7)
- 해양경찰청, ‘연안VTS 확대구축 중장기계획’ 수립(‘12.2)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연안·항만VTS 업무를 국민안전처로 통합(‘14.11.19)
- 해양경찰청, ‘연안·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 통합구축 추진계획’ 수립(‘17.7)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연안·항만VTS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17.7.26)
- 해양수산부 소속 VTS 인력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19.10.29)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19.12.3)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20.6.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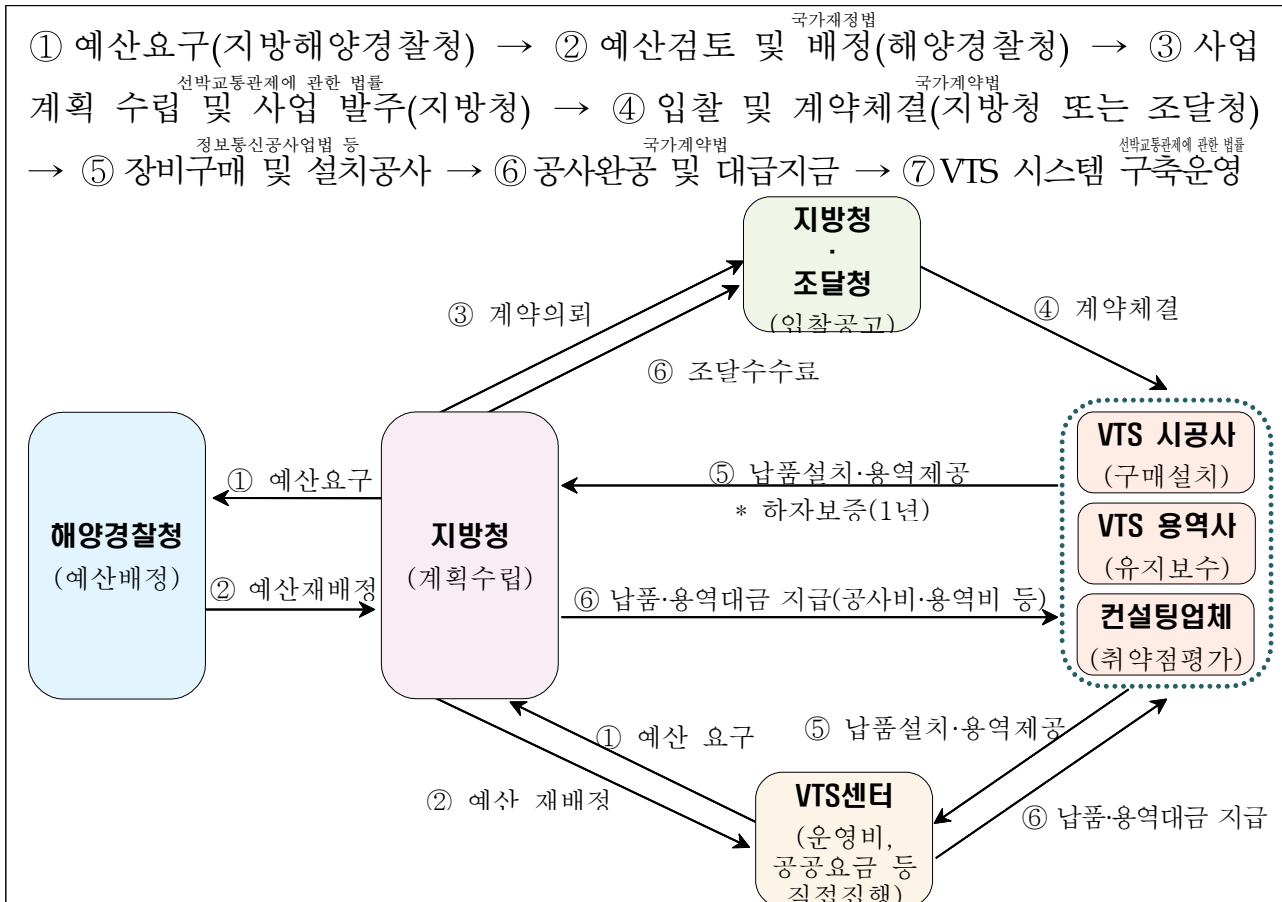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21,140	24,611	29,919	36,547	22,757

- 사업규모 : 전국 해역에 레이더, 운영시스템, 통신장비 등 선박교통관제(VTS) 시스템 설치 및 운영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선박운항자, 도선사, 해운회사 등 VTS 이용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6) 통신위성장비관리 (300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2	302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인프라	통신위성장비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통신위성장비관리	15,836	24,790	24,790	18,938	18,309	△ 6,481	△ 26.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통신·항해장비의 유지 보수와 노후 통신장비 교체, 부족장비 보강으로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여 해상치안 업무의 효율성 향상
- 경비합정 통신망을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위성통신 방식으로 개선하여 모든 해역 해상경비 체제를 효율적으로 지원
- 신속한 수색구조 임무수행을 위한 조난위성 통신장비 등 유지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 제32조 및 국제협약에 의한 조난통신 수신 해상구조조정본부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 청취하여야 한다.
- 선박안전법 제29조(무선설비) 및 물품관리법 제23조(물품의 정비)
- 해양경찰법 제16조(해양안전 확보 노력)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대응을 위하여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지휘·통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보장 및 사고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술, 해양구조방식 등의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법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함정·항공기 및 공용 또는 개인용 무기·경찰장구와 각종 장비·시설(구조·구난·오염방제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해양경찰장비등”이라 한다)의 도입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등의 도입 및 관리·운영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조난통신 청취 및 수신을 위해 '96년부터 조난통신시설을 운영
- 원거리 해역에서 경비임무 수행을 위한 위성통신망 구축 필요로 '05년 7월 위성통신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 후 연차적 추진
- '16년 국제안전통신센터,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상조난신호 처리
- '20년부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전 구조기관의 지휘통신망 일원화 및 신속한 상황전파로 성공적인 구조업무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5,960	18,416	17,531	24,790	18,309

- 기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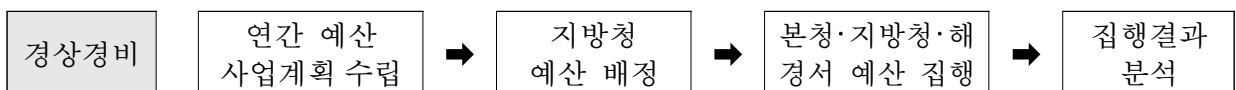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 직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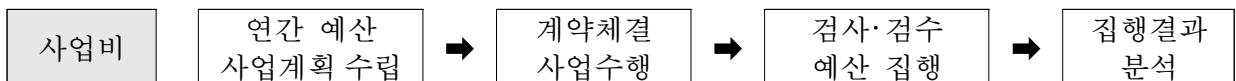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난안전 통신망구축 (영상공유 시스템구축)	출연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200	11%	해양경찰법 제21조2항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5조(업무의 위탁)

3) 사업 집행절차

- 장비운영 및 유지



- 주요사업비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영상공유시스템 구축)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해양경찰청 (200백만원)	=> (200백만원)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200백만원)	=> (200백만원)	이투 컨소시엄 외 2개 기관

사 업 명
(7) 함정건조 (310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60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1	300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장비도입	함정건조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함정건조	124,561	137,299	137,299	176,769	174,189	36,890	2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양사고 예방, 구조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함정 신규증강, 내구연한 초과 경비함정 대체건조 및 경비함정탑재 노후 고속단정 교체 사업임
- ※ 국정과제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해양경찰법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함정·항공기 및 공용 또는 개인용 무기 경찰장구와 각종 장비·시설(구조·구난·오염방제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해양경찰장비등”이라한다)의 도입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등의 도입 및 관리·운영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신속한 분류·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현장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자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4조(함정 내구연한의 기준)** 함정 내구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선 : 선령 20년, 2. F.R.P선 및 알루미늄선 : 선령 15년
- ### ② 추진경위
- ('03년~'07년) 연근해 해상치안 및 각종 사고 대응을 위한 노후 소형경비정 57척 대체건조
 - ('06년~'10년) 투자자금(선박펀드)을 활용, 안정적인 함정건조 재원의 조기투입으로 노후 중·대형 경비함 31척 대체건조
 - ('11. 12월) 총리실 및 관계부처 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대형함정 6척(완료 3, 진행 1, 계획 2) 및 고속단정 18대 교체 계획 반영
 - ('14. 12월)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당·정·청 협의회)에 따라 대형함정 탑재 고속단정 30대 교체 계획 반영
 - ('16년) 조선경기 활성화를 위한 3000톤 경비함 1척 등 19척 추경사업 반영
 - ('19년) 북동어장(대화퇴) 전담 경비함 1척 반영
 - ('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조선업 수주부진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주도 신규물량 지원, 3000톤 경비함 1척 등 7척 추경사업 반영
 - ('21년) 북동어장(대화퇴) 전담 경비함 1척(2번함), 서부정비창 예인정 2척 반영

- ('22년) 서해전력증강 대형함정 1척(1번함), 노후 대형함정 등 경비함정 6척, 노후 고속단정 교체 12대, 노후 방탄보트 교체 2대 반영

국정과제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

실천과제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확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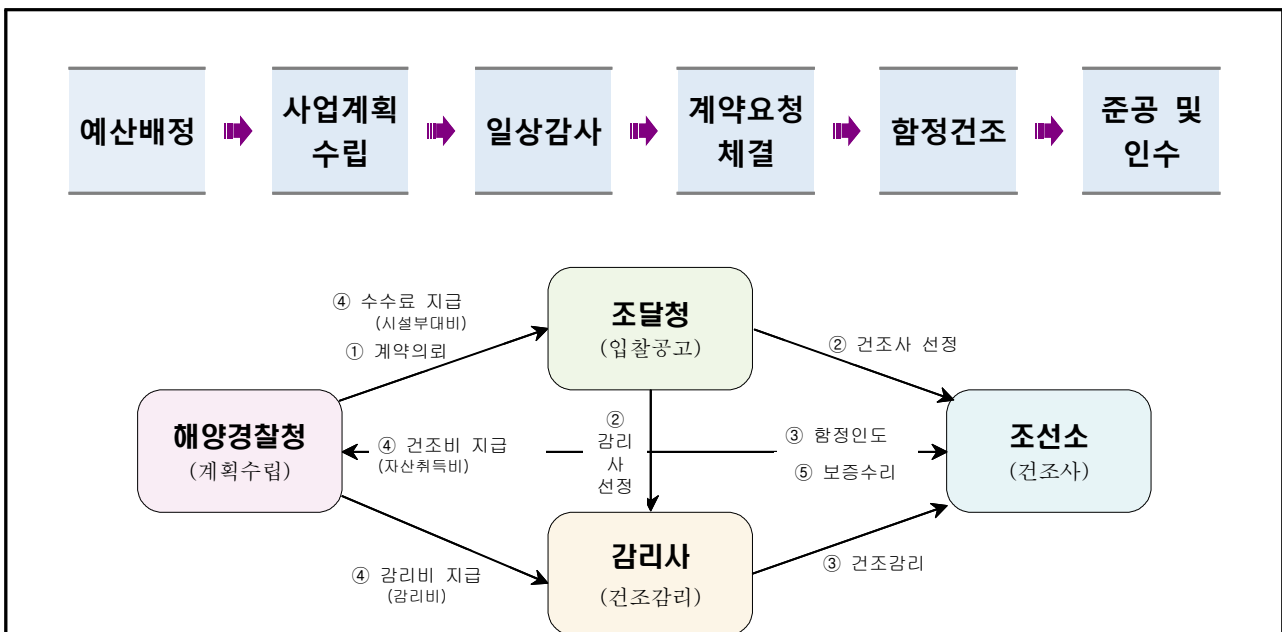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21,459	170,500	124,843	137,299	174,18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8) 항공기도입 (310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1	301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장비도입	항공기도입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항공기도입	43,959	57,337	57,314	65,449	65,449	8,112	14.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양재난사고 발생시 골든타임(1시간) 내 신속한 상황대응 체제 유지 등 구난체계 구축
- 독도·이어도 및 가상 EEZ해역까지 실질적인 해·공 입체적 경비에 필요한 항공세력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경비법 제2조(정의)
 - "경비세력"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3조(수난구조의 관할)
 - 해수면에서의 수난구조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조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조는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장 제55조(재난대비 능력보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장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 활동에 관해서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제5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1세기 해상치안 역량강화를 위한 최적 항공기 도입방안 연구용역('07. 8월)
- 해양사고 대응 및 해상안전 관리를 위한 「해양경찰 장비증강 목표기획서 수립」('15. 12월)
- 노후헬기 수명 및 운영관리 연구용역('17. 6월)
- 유·무인항공기 도입 및 운영 발전 방안 연구용역('19.12월)
- 해양경찰 장비도입 마스터플랜 연구용역('21. 1월)
- 극우단체 독도 상륙기도, 해양탐사선 해저지형 탐사 시도 저지 등 독도주권 수호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21,807	31,464	46,759	57,314	65,449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도서민, 해양레저활동자, 해양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9) 경비대테러역량강화 (310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경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2	300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경비수사활동지원	경비대테러역량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경비대테러역량강화	8,756	9,654	9,592	15,451	11,776	2,122	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내역사업) 동 내역사업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체계 구축, 외국어선 감시·단속활동 강화, 국가 보위 업무, 해양테러 예방·진압 및 해상경호 업무와 해양상황발생시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한 상황실 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 (해상경비활동지원·경비함정운영지원)
 - 독도 · 이어도 및 EEZ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체계 구축

-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 외국어선 감시 · 단속활동 강화
- 대북관련 업무 및 국가위기관리, 통합방위 등 국가 보위 업무수행
- (특공대활동지원)
 - 해상테러 예방 · 진압, 해상경호임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등 대테러 역량강화를 위한 장비구매 및 해난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특공대 운영
- (종합상황실운영)
 - 해상상황발생시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한 상황실 활동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해양경비법(법률 제17798호) 제 7조 (해양경비활동의 범위) 해양경찰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1. 해양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2.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3. 해상경호, 대테러 및 대간첩작전
 4.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5.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6. 그 밖에 경비수역에서 해양경비를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영해 및 접속수역법(법률 제15429호)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법률
- 통합방위법(법률 제17686호)
-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률 제14750호)
- 테러방지법(법률 제17466호)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18호)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른 「해양테러 위기대응실무매뉴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 ② 삭제 <2014. 12. 3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구조본부의 장은 조난사고와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국정과제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주변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해양경비력을 강화하고, 잠정조치수역 등 원거리 해역까지 어업권 및 국민안전 보호로 해양영토주권 수호
- ② 추진경위
- '96년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후 인접국과 시급한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업협정 체결('99년 한·일, '01년 한·중)
 - '01년 특수구조대 창설 후 서해훼리호 침몰 등 대형재난에 적극 대응
 - '02년 해양경찰특공대 창설(현 중부), '05년 동·서·남해특공대 창설, '12년 제주특공대 창설
 - 각 특공대 창설 시 「국가급 특공대」 지정
 - 국가급 특공대(총 4개 부대) : 해경특공대, 경찰특공대, 해군UDT, 육군 707
 -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에 따라 해양대테러 주무기관으로 지정, 대테러 예방활동 및 진압훈련 적극 실시('02년 이후)
 - '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부터 해상경호의 중요성 인식, 해양경찰만의 독자적 해상경호 체계 구축·운용
 - '08.10.2. 대통령 지시사항 “중국의 불법조업어선 단속과 관련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는 단속 방법에 대한 연구의 검토 및 해경의 장비 보완, 사기를 진작 하도록 할 것”
 - '09년 5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 '09년 7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차단 주무기관으로 결정

- '10년 ~ 현재 PSI임무수행을 위한 장비도입 추진
- '11. 12월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 종합대책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발표
- '11. 12월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경찰관 안전 확보 지시, 장비 인력보강과 함께 자체 훈련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 강구”
- G-20 정상회의('10), 핵안보정상회의 및 여수엑스포('12), 인천 아시안게임 및 한 아세안 정상회의('14) 해상경호 안전대책 수행
- '13년 동해청 특공대 훈련장 완공, '16년 9월 서해청 특공대 훈련장 완공
- '16. 10월 정부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발표
- '17. 4월 해양경비법 개정
- '17. 10월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해양경찰청고시 제2017-3호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17. 12월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관련 상황요원 부족 등 초동대처 미흡으로 인력 증원, 훈련강화, 노후화장비 개선 등 상황대응역량강화 추진
- '18. 2 ~ 3월 평창 동계올림픽 대테러 안전활동
- '19.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해상경호 안전활동
- '21. 6월 남해청 특공대 훈련장 완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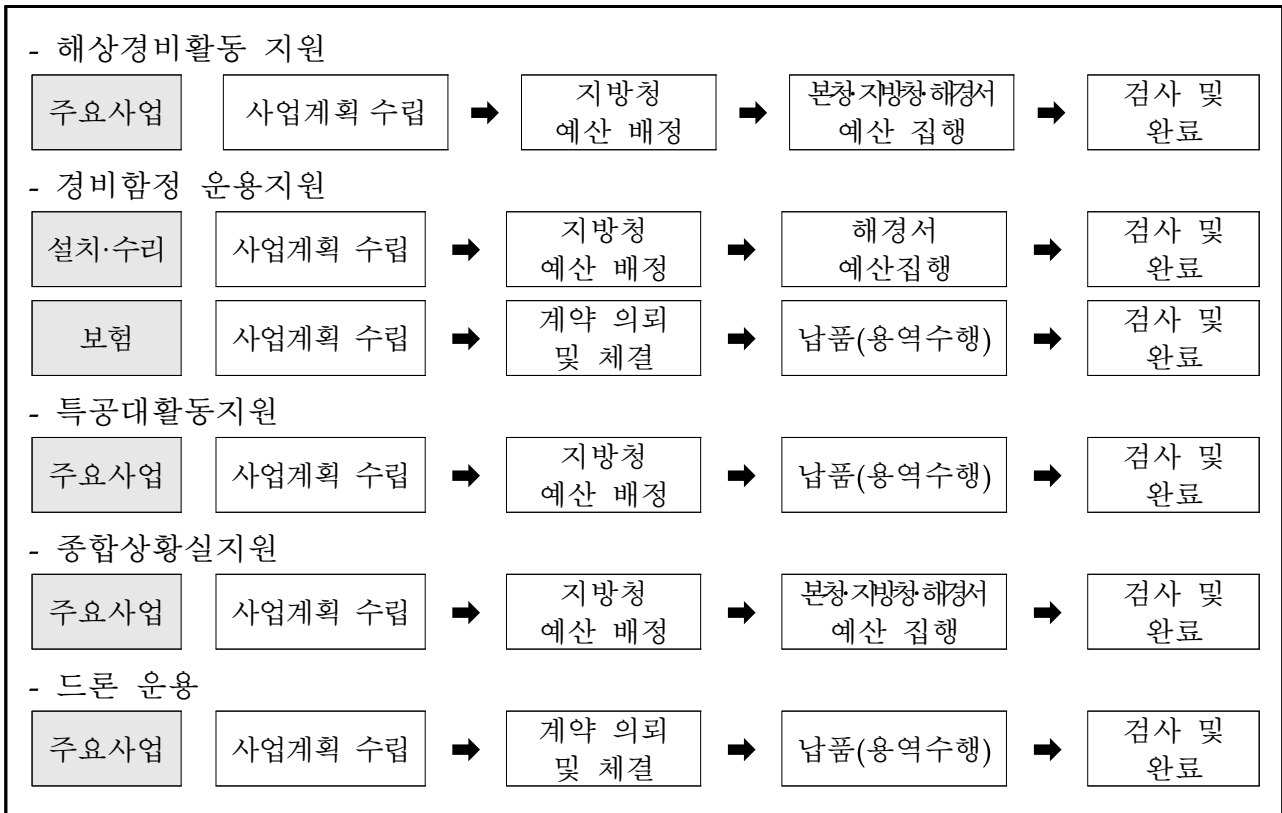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5,966	6,201	9,156	9,592	11,77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0) 범죄수사활동 (310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수사국	0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2	301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경비수사활동지원	범죄수사활동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범죄수사활동	5,888	6,565	6,482	7,540	8,047	1,482	2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범죄수사지원) 사체부검, 압수물보관 및 현장조사, 범인검거 등 해양범죄 단속과 수·형사 경찰관의 사건수사 등 범죄수사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
- (수사장비확보및유지) 범죄의 지능화·광역화 대비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디지털증거물 확보를 위한 수사장비 보강
- (수사시설유지보수)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권개혁 등 사법환경 변화 반영, 조사실

및 유치장 환경개선 등 수사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인권보호 강화

- (사건기록물체계구축) 수사권개혁으로 불송치하는 수사기록을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수사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보관실 개선
- (과학수사증거물분석체계구축) 범죄수법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객관적·과학적 증거물분석 등 첨단기술·장비를 활용한 합리적 과학수사로 전환
- (수사차량교체) 현장 기동력과 탑승자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수사차량 교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 ②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 정부조직법 제43조(해양수산부) ②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 해양경찰법 제14조(직무) ②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② 추진경위

- 1962. 05. 범죄수사권 부여(범죄수사활동 실시)
- 1969. 09. 해양경찰대 정보수사과 신설
- 2008. 12. 형사과(형사마약계, 광역수사팀, 마약반) 신설
- 2014. 11.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 해상수사정보과 신설
- 2017. 07.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해양경찰청 수사과, 형사과 신설
- 2021. 01. 직제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과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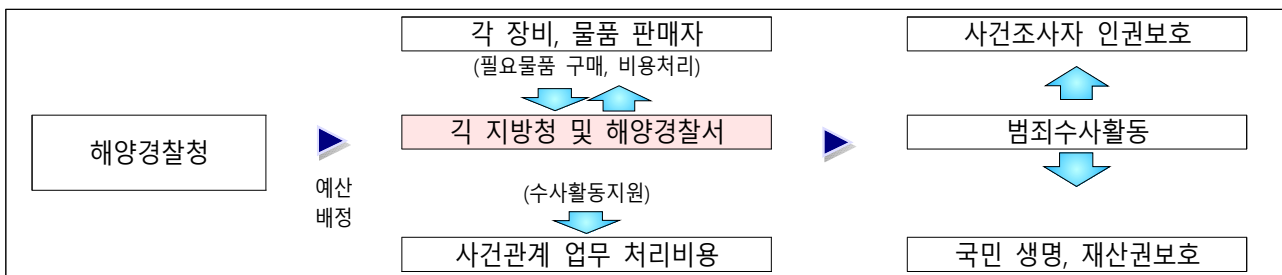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4,915	5,393	5,969	6,482	8,047

- 기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1) 외사경찰활동지원(310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2	302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경비수사활동지원	외사경찰활동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정보국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외사과	하 만 식	윤 기 성	이 의 선
			032-835-2068	032-835-2168	032-835-256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외사경찰활동지원	1,290	1,437	1,415	1,967	1,967	530	3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불법외국어선 사법처리)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압수(몰수) 폐기 등 불법 외국어선 사법처리 강화, 어족자원 보호 및 해양주권 강화
- (외사사범 단속활동) 해상을 통한 밀수, 밀·입출국, 해양 산업기술유출 등 국부유출 방지 등 국제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및 해양 국제공조 체계 확립
- (외사차량·장비 등 유지관리) 신속하고 효율적인 외사사범 단속 활동을 위한 외근 활동 차량 운영 및 외사장비 성능 유지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경찰법 제2조(해양경찰의 책무)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 정부조직법 제43조 해양수산부

제①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3.2을 둔다. ③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 밀항단속법 제2조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밀항”이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는 것을 말한다.
- 영해및접속수역법 제5조 제①항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 할 수 있다. ②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5조(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등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형사소송법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62. 5. 5. 범죄수사권 부여(범죄수사활동 실시)
- '08. 3.10. 정보수사국 외사과 신설
- '14.11.19. 정부조직개편으로 국민안전처 신설(해상수사정보과 외사계)
- '17. 7.26. 정부조직개편으로 해양경찰청 신설(수사정보국 외사과)
- '21. 1.14. 직제 개정에 따른 국제정보국 신설(국제정보국 외사과)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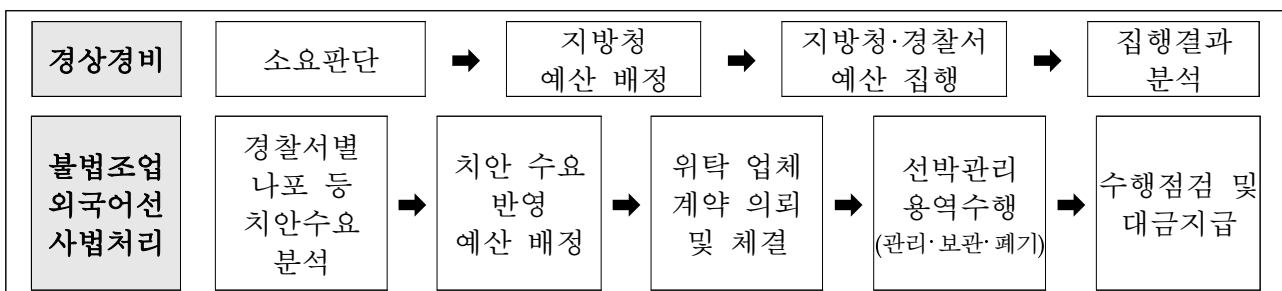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740	1,760	1,332	1,437	1,967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2) 정보보안활동지원 (310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2	304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경비수사활동지원	정보보안활동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정보보안활동지원	-	144	144	177	177	33	2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편익정보활동) 해양에서의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및 가족 돌봄 지원 및 해양 공공갈등 해소, 집단행동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안녕 정보활동으로 국정운영 지원
- (안보협력체계구축) 해양 안보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기반 구축 및 국내·외 안보 위해요인 적극적 보안수사 활동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경찰관직무집행법(법률 제16036호) 제2조(직무의 범위)
 -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과의 공조·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해양경찰법」 제14조(직무)
 - 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21.1月>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국제정보국)
 - 제1항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제5조(구성 및 담당사무)
 - 제1항 중앙구조본부는 ... 하부조직으로 공보관, 정보관을 둘 수 있고 ...

② 추진경위

- 2014.11.19. 정부조직개편 국민안전처 신설(해상수사정보과 정보계)
- 2017. 7.26. 정부조직개편 해양경찰청 신설(수사정보국 정보과)
- 2021. 1.14. 해양경찰청 직제 개정에 따른 국제정보국 신설(국제정보국 외사과, 정보과, 보안과, 국제협력과)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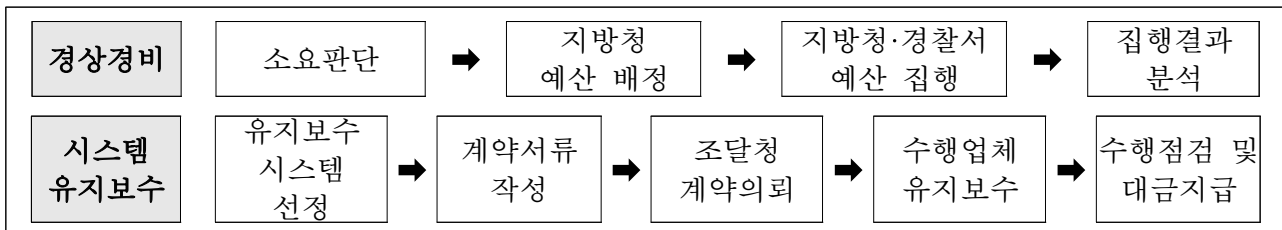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	-	-	144	177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3) 함정정비유지 (310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3	300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정비지원	함정정비유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함정정비유지	12,906	16,043	16,043	16,741	16,215	172	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함정·연안인명구조장비·바지류 운용에 필요한 정비유지와 함정 계류시설 개·보수 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장비기술국)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찰장비(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 등)의 개선 및 획득 2. **해양경찰 장비의 정비 및 유지 관리 등**
- 물품관리법 제23조(물품의 정비)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이 정한 정비기준이 있으면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비기준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관할구역을 완벽히 경비할 수 있도록 함정·연안인명구조장비·바지류의 적기 수리지원으로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경비역량 강화에 기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1,928	12,028	12,398	16,043	16,215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절차도

흐름도	주기	주 요 내 용	비 고
예산확보	년	○ 장비관리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예산요구 및 확보	본청 주관
↓			
연간계획 수립	년	○ 함정정비 등 정비·유지를 위한 소요예산 ○ 전용부두 시설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 통합장비관리시스템 유지를 위한 소요예산 ○ 기타 정비업무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본청 수립
↓			
연간계획 의거 소요예산 재배정	분기	○ 연간계획 의거 함정정비유지 예산 소속기관 재배정	소속기관 재배정
↓			
응급수리 관련 소요예산 파악	수시	○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소요 예산 파악	소속기관 실무자 협의
↓			
응급수리 관련 지원범위 결정	년	○ 해경 정비창, 해군 정비창 응급수리 입창지원 여부확인 ○ 함정정비유지 예산 범위 내 응급수리 소요예산 추가배정	정비창 실무자 협의

사 업 명
(14) 항공기정비유지 (310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54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3	301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정비지원	항공기정비유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항공기정비유지	33,733	36,514	36,446	34,325	34,017	△2,497	△6.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비비) 동 내역사업은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가동률 향상을 위해 항공기 검사정비, 부품확보 및 장비 수리 등 항공기 운용을 위해 필요한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것임
- (항공유) 동 내역사업은 항공기 운용을 위해 항공유, 지상지원 장비류 등을 지원하는 것임
- (항공보험) 동 내역사업은 항공기사고 등 위험발생 대비를 위해 인적·물적 대상으로

법률상 제3자 배상 책임 등 사고처리를 지원하는 것임

- (지상지원장비) 동 내역사업은 항공기 성능향상, 수색구조, 긴급출동 등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운용장비(검사·안전·지원 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업무지원) 동 내역사업은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항공 인력·시설 등 대상으로 임차료, 국내·외 직무교육, 출장, 특수신체검사, 항공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열상장비) 수색구조 등 임무장비인 열상장비를 확보하여 수리공백 지원을 지원하는 것임
- (CN-235 R/D 주처리장치 교체) 동 내역사업은 CN-235 R/D 주처리장치 노후화에 따른 운영체계 및 하드웨어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임
- (고정의 위성통신망 구축) 동 내역사업은 위성통신망을 통한 고정의 ⇔ 상황실·함정간 실시간 정보공유로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항공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경찰용·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이하 “경찰용·세관용 항공기”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세관용 항공기”로 본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보험 가입)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선박·항공기 및 그 종물과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청 항공기도입 현황은 '89년 1대로 시작하여 현재 24대(비행기 6, 헬기 18)의 신속하고 안전한 해상치안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항공대는 전국 13개소(항공대 10개소, 항공정비대 2개소, 보급지원대 1개소)를 운용 중에 있음

- 주변국 해양치안세력 강화에 맞서 해양에서 자국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해상치안 기관으로서 우리청의 항공세력 확대 소요 증대, 항공기 수색·구조 등 역할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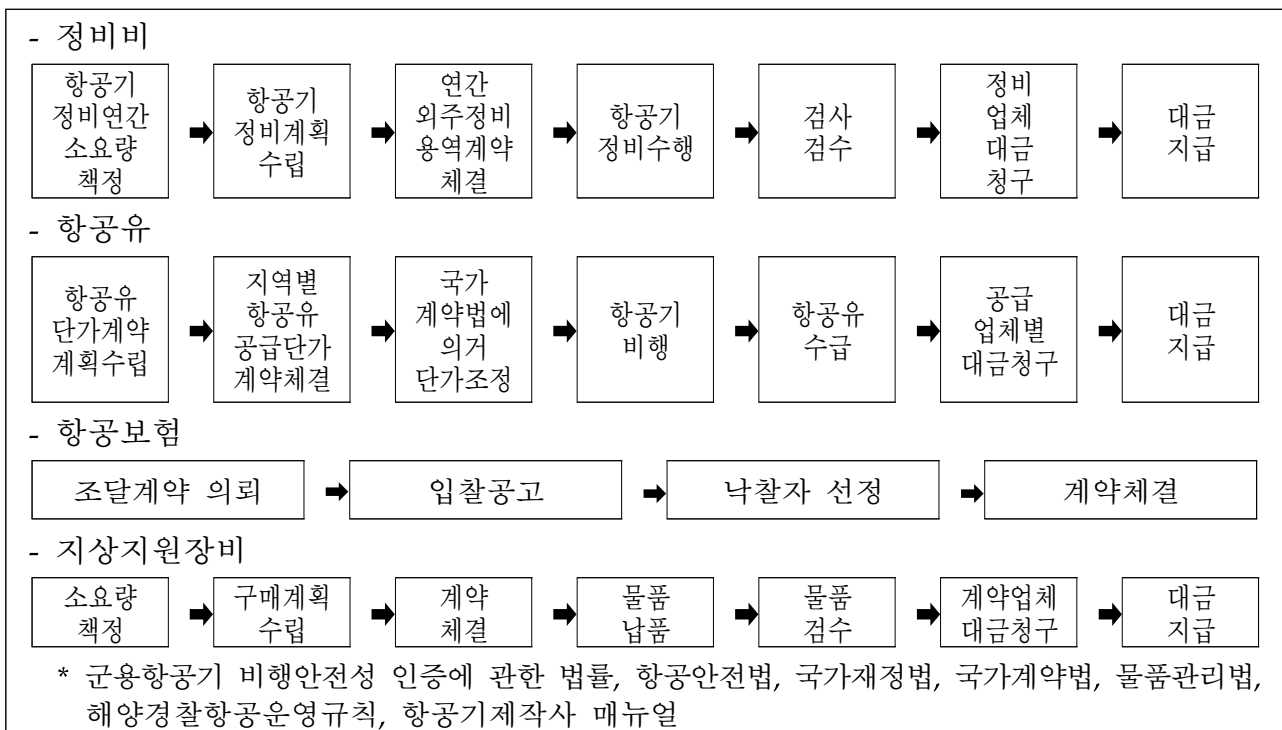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26,845	30,644	34,149	36,446	34,017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5) 차량정비유지 (310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3	302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정비지원	차량정비유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차량정비유지	2,084	2,971	2,971	3,938	3,938	967	3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차량구입)

원활한 해상치안 업무 수행 및 기동력 확보를 위해 공용차량을 구매·보급하고 장기 사용, 과다운행 등 노후차량에 대한 적기 교체

- (차량유지운영)

공용차량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시설장비유지·유류 등 수요에 맞는 운영비 집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영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4(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①법제58조의 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1. 6. 30.>②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율 중 80퍼센트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 해양경찰청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 차량의 배치 경찰차량은 다음 각호의 해양경찰기관에 배치한다.1. 해양경찰청2. 해양경찰교육원3. 지방해양경찰청4. 해양경찰서5. 해양경찰정비창6. 파출소, 출장소7. 그 밖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 및 부서
- 해양경찰청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 정비 및 수리장소 경찰차량의 정비와 수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정비업의 종류에서 규정한 정비시설이 완비된 정비 업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9조 정비 및 수리① 제7조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불량개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수리가 가능한 소모부속품은 교환하고 이외 수리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 하지 않는 파

출소·출장소 및 파견부서 등의 차량 유류급유 및 수리는 예산집행 규정에 의거
운용부서 현지 실정에 맞게 집행 운용 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② 추진경위

- 원활한 해상치안 업무 수행 및 기동력 확보를 위한 노후차량 대체 지원
- 해안가 운행 및 순찰로 인한 염분부식, 차량수명 단축
- 장기사용으로 수리·정비 수요증가 등 노후 순찰차 우선 교체
- * 해안가 위주 배치된 순찰·구조차량의 차체부식으로 인한 교체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항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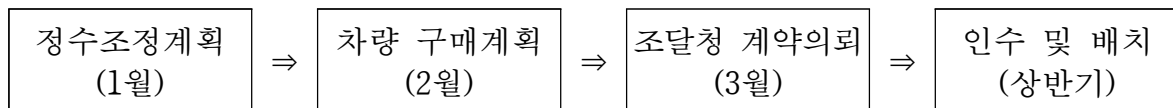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2,614	2,224	2,111	2,971	3,93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및 일반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차량구매 절차



○ 차량 유지운영비 집행절차

- 차량 유지비 연간 소요비 책정(예산배정) → 정비(차량수리), 유류, 소모품 등 구매계획 → 수리의뢰 및 구매계약 → 수리 및 납품검수 → 대금지급

사 업 명						
(16) 해양경찰서부정비창신설(310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3	303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정비지원	해양경찰서부정비창신설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신설	43,056	53,773	53,773	57,012	57,012	3,239	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現 해양경찰 정비창(부산) 함정정비 과부하 해소 및 1000톤 이상 대형함정을 자체 상가 정비할 수 있는 정비창 신축으로 최상의 해양치안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③ 해양경찰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을 둔다.
- 물품관리법 제23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 합정 정비규칙

② 추진경위

- '17. 9월 서부정비창 신설 추진계획 수립
- '18. 5월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선정 및 착수 / '19. 8월 예타 통과결
- '19. 12월 ~ '20. 9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 '20. 10월 ~ '21. 10월 기본조사(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용역
- '21. 6월 총사업비 증액 협의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 발주
- '21. 12월 기본설계 기술제안 낙찰자 선정 및 우선시공 착수
- '22. 2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총사업비 증액 및 총사업 기간 연장
- '22. 6월 실시설계 적격심의 통과 및 우선시공 완료
- '22. 8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2. 9월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승인
- '22. 10월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재해영향평가 승인
- '22. 11월 별목, 콘크리트 블록 제장 등 토목공사 착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240,032백만원('22. 12월 기준)
- 사업기간 : 2019년 ~ 2025년(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2,818	4,169	13,249	53,773	57,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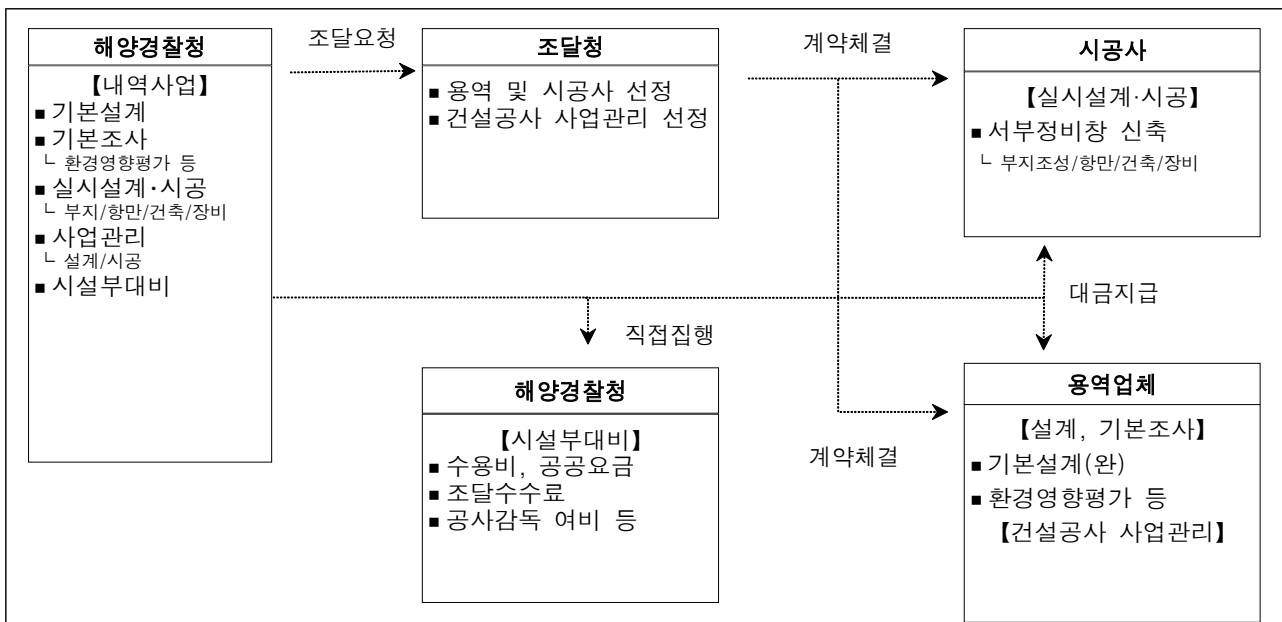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100,698m²
- 플로팅도크 1기(5천톤급), 승리프트 1기(7백톤급), 의장안벽, 본관, 수리공장, 엔진 및 발전기 시운전실, 보급창고, 무기탄약고, 폐수처리시설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7) 합정유류관리 (310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4	300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보급지원	합정유류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합정유류관리	103,113	95,982	95,982	123,277	123,277	27,295	2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유류바지건조) 경비합정 긴급 상황 대응 및 유류 비축장소 확보를 위해 유류바지 미보유 경찰서(사천서, 평택서) 신규 건조
- (유류구입) 경비합정 운용에 필수적인 유류의 적기 공급
- (운활유구입) 경비합정 주요 엔진의 부품을 보호하고 수명연장을 위한 지원
- (환경책임보험) 유류바지 파공 등 발생하는 해양오염에 대한 피해 보장보험 가입
- (선저및폐기물처리) 선저폐수 및 해양폐기물을 신속처리하여 해양오염 발생 방지

- (유류바지이전설치 등) 경찰서 전용부두 신설로 인한 기존 시설물 이동을 위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함정 운영관리 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252호)

- 제39조(유류확보) ①해경청장은 함정의 연간 운항계획과 기관형별, 유류 소모 기준에 근거하여 함정운용에 필요한 연간 유류 소요량을 산출한다. ②경유는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서, 서특단으로 연간 월별 배정하며 매월말 실수령량만 대금지급 운용한다. ③운할유는 분기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일괄구매 해양경찰서, 서특단에 보급 운용한다. ④잡유 및 유류바지, 원거리에 배치되어 유류공급이 곤란한 순찰정용 경유는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서, 서특단에 예산 배정 현지구매 운용한다.
- 제40조(유류소모기준) ①유류소요량 산출에 있어서 연료유의 소요량은 기관제작 회사가 정한 소모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운할유의 소요량은 연료유 소요량의 3/100으로 한다. ②함정운용에 따른 유류의 실제소모량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측에 의하여 산출한다
- 제41조(유류공급) ①해양경찰청장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유류 소요량에 대하여 유류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양경찰서, 서특단 및 해양경찰정비창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구입 확보된 유류는 해양경찰서, 서특단 및 해양경찰정비창의 보관시설에 보관하거나 공급업체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공급은 함정장의 청구에 의하여 해경서장, 서특단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이 발급하는 공급지시서에 따라 공급한다. 다만, 공급업체 보관은 자체 보관시설이 없는 해양경찰서에 한한다. ③구입한 유류를 공급업체로부터 해양경찰서, 서특단 자체 보관시설로 수용하거나 해양경찰서, 서특단 또는 공급업체에서 보관중인 유류를 함정에 공급할 때에는 해경서장, 서특단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이 지명하는 검수단이 입회하여 수령 또는 공급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해상치안 수요 증가 및 전력증강 사업에 따른 보유 함정 증가 및 대형화 추세에 따라 유류 소모량 증가
- 해양사고 사전 예방활동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유류 적기 공급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95,558	86,730	100,220	127,277	123,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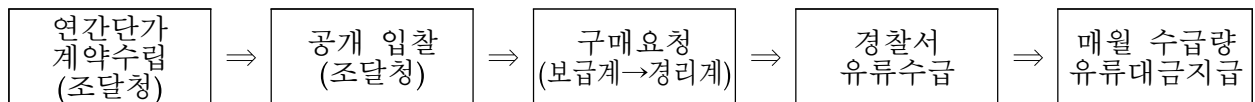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절차도



- 계약방식 : 매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

사 업 명
(18) 함정보급관리 (310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4	301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보급지원	함정보급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함정보급관리	5,971	6,692	6,692	8,372	8,008	1,316	19.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함정운용에 필수적인 소모품·비품, 기관장비 부속품 등 관련 물품을 확보하여 원활한 함정운용을 도모하고 해양 치안·경비·구조 역량 강화의 기반을 마련

- (소모품 구입) 함정 유지·운용에 필요한 각종 함수품 등 소모성 물품 구입
- (기관부속품 구입) 함정 기관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부속품 구입

- (내구성물품 구입) 함정 운용에 필요한 비품, 안전장비 등 각종 내구성 물품 구입
- (먹는 물 관리비용) 함정 청수탱크 세척, 정수기 관리 등 먹는 물 관리소요 비용
- (공기청정기 렌탈비용) 함정 내부 공기 정화를 위한 공기청정기 렌탈·관리 비용
- (보급지원) 물품 택배비용, 유류마지 태풍 피항비용 등 보급관련 지원 비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장비기술국)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찰장비(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 등)의 개선 및 획득 2. **물품·무기·탄약·화학 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통제**
- 물품관리법 제15조(수급관리계획)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별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② 물품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물품과 그 밖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함정운용에 있어 필수적인 각종 물품의 적기 보급으로 함정 가동력 향상, 함정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해양 치안·경비·구조 등 역량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5,624	5,624	5,972	6,692	8,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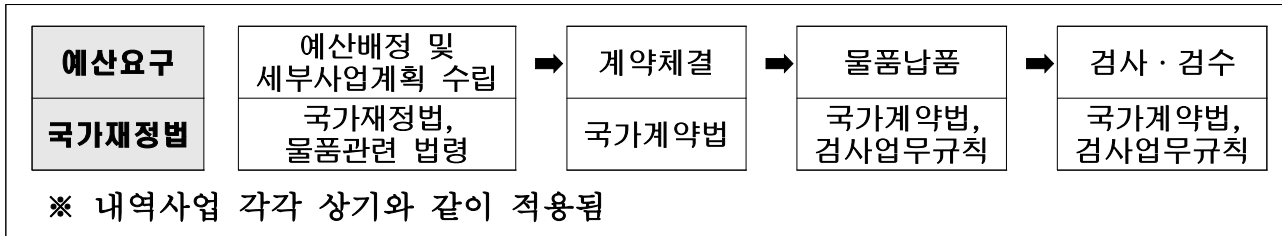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9) 급대여품관리 (3104-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	020	024
명칭	(11)	(54)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4	302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보급지원	급대여품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급대여품관리	5,991	5,825	5,825	7,272	7,272	1,447	2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임경찰) 신임 경찰관 및 간부후보생 정복, 근무복, 기동복 등 경찰제복 구매 지급으로 경찰관 품위유지 및 해상치안 질서 확립
- (기존경찰) 기존 경찰관 정복, 근무복, 기동복 등 경찰제복 구매 지급으로 경찰관 품위유지 및 해상치안 질서 확립
- (기존의경) 기존 의무경찰 근무복, 기동복 등 경찰제복 구매 지급으로 경찰관 품위

유지 및 해상치안 질서 확립

- (특수직무경찰관) 대테러활동, 불법외국어선 단속 및 구조활동 등 해상에서 종합적인 치안임무 경찰관 안전을 위한 기능적인 경찰복제 구매 지급으로 해상치안질서 확립
- (경찰장구) 외국어선 단속, 검문검색 및 해상작전 등 해상치안 임무수행시 경찰관 안전을 위한 기능적인 경찰장구류 구매 지급으로 해상치안질서 확립
- (기타피복-이관) 해양오염예방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파출소 근무자 등 품위유지를 위한 복제 및 해상치안 임무수행을 위한 안전장구류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가. 경찰공무원법 제26조 복제 및 무기휴대

1.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2.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3.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2조 착용수칙

1.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제복(이하 "경찰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제9조 특수제복의 차림

- 특수제복의 차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각 호 중 일부의 착용이나 착장은 생략할 수 있다.

라.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2조 급여품

1. 급여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마.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3조 대여품

- 대여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의무경찰 제복 및 장구류 등 구입 관리·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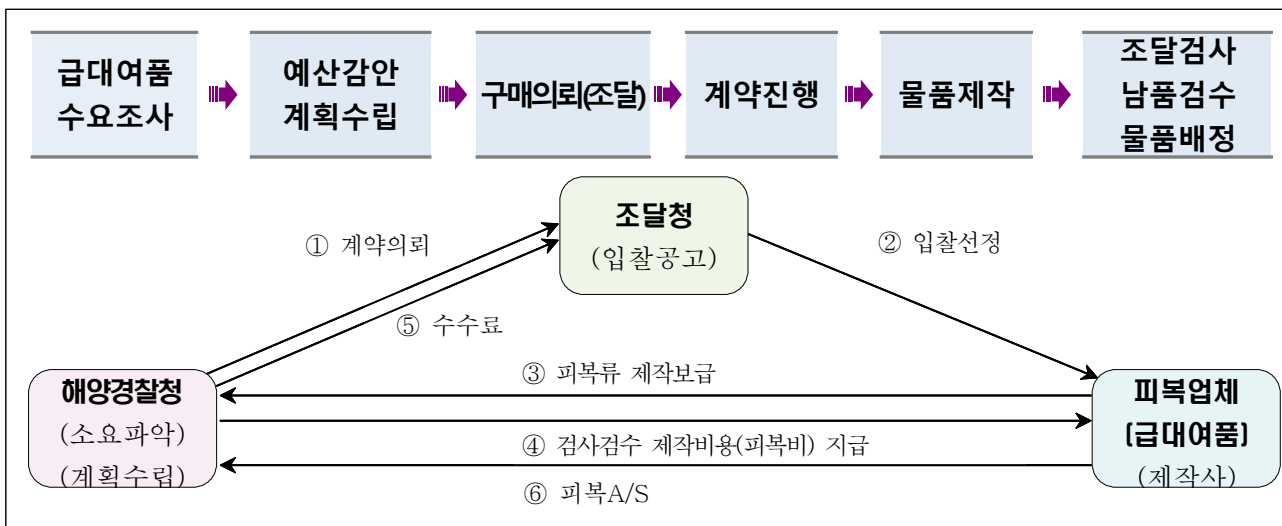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5,201	6,005	6,005	5,825	7,272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경찰공무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0) 진압및전투장비관리 (3104-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4	303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보급지원	진압및전투장비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진압및전투장비관리	1,677	2,054	2,054	2,068	2,068	14	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격통제장비 정비)

동 내역사업은 함정에 탑재된 사격통제장비의 원활 운용을 위한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것임

- (탄약 및 병기유지물품 구입)

동 내역사업은 함정 사격훈련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탄약, 병기유지물품 등을 보급 지원하는 것임

- (무기탄약점검 여비)

동 내역사업은 무기탄약 관리업무를 위해 출장 여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상비상자 등 교체)

동 내역사업은 함정에 배치관 상비상자 보수, 교체 등을 지원하는 것임

- (방독면 및 노후전투장비 교체)

동 내역사업은 현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방독면 및 노후전투장비 등을 보급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서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복제 및 무기휴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무기·탄약류 등 관리 규칙 제2장 무기·탄약
- 진압장비 등 관리규칙 제2장 진압장비
- 진압장비 등 관리규칙 제3장 진압 및 보호장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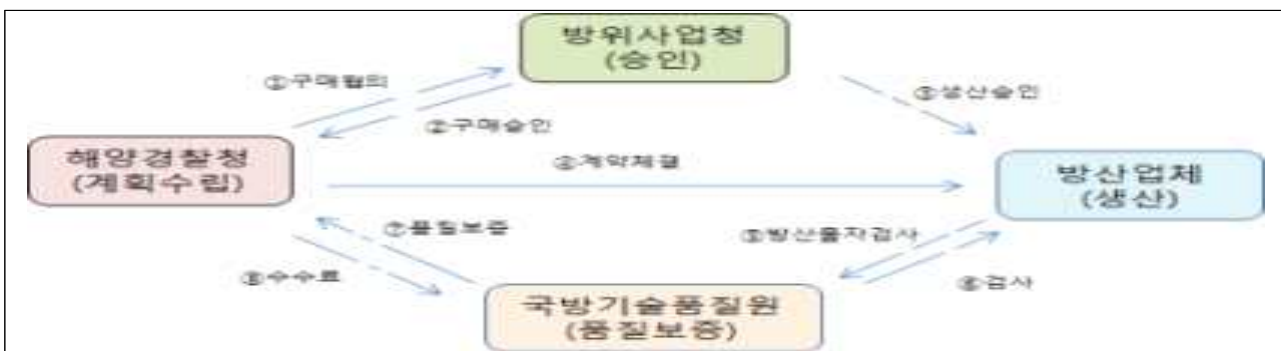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06.6.8) : 「동해상 작전수행 능력 증강대책 및 한미 군사 지휘관계 구상」 보고서
 - 해경함정은 우발상황 발생 시 임무교대를 보장할 수 있는 척수 확보
 - 상황발생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40밀리 자동포로 무장 강화
- 대통령 지시('11. 12. 27) : 「국토해양부 '12년 연두업무」 보고서
 - 장비·인력 보강과 함께 자체 훈련을 통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 '11. 12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중 인천해경서 3005함 故 이청호 경사 순직 사건 계기로 국무총리실 주관 해경청, 기재부, 행안부, 외통부, 법무부, 국토부, 농식품부, 국가보훈처 대책회의 결과 단속함정(대형함정 9척, 고속단정 30대) 증강, 해상특수기동대 인력(102명) 보강, 단속장 비 보강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경찰관 안전성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 마련 결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1) 함정계획정비 (42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비창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31	301
명칭	정비창운영	함정정비	함정계획정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함정계획정비	39,460	40,600	40,600	43,778	42,378	1,778	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기관정비) 경비함정 주기관(엔진) 제작사 수리기준에 따른 분해수리 실시로 본래의 함정성능 유지를 지원하는 것임
- (기본정비) 함정 선저의 상태 유지를 위해 함정을 상가대에 올려놓고 추진계통 등을 검사·수리하고, 수선하의 선저외판 검사, 소제(조패류 등 이물질), 청락, 도장 등을 실시하는 것임

- (정비지원엔진) 엔진전체정비를 위해 주기관을 분해·정비 후 재조립하여 탑재하는 수리방식에서 정비지원엔진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도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경찰청 함정정비규칙 제6조(함정정비의 종류 및 범위)
-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장 기본운영규칙
- 해양경찰청 함정정비규칙

② 추진경위

- 해경함정 엔진의 제작사 정비시간에 따른 분해수리 및 함정정비규칙상 주기에 따른 선체정비 함정의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선박 펀드 사업으로 도입된 중·대형함정의 주기관(엔진,발전기) 정비 주기(총 분해 및 중간분해수리 : 5~10년) '18년 이후 집중 도래로, 이들 함정의 수리비 대폭증가
 - * '08년~'13년까지 중·대형 함정 42척(대13, 중29)을 건조 (연평균 7.6척 건조)
 - ** '08년 중·대형함정 44척 → '22년 중·대형함정 78척 (1.8배 증가)
- 대상함정: 353척 중 243척(경비함정 188, 특수정 55척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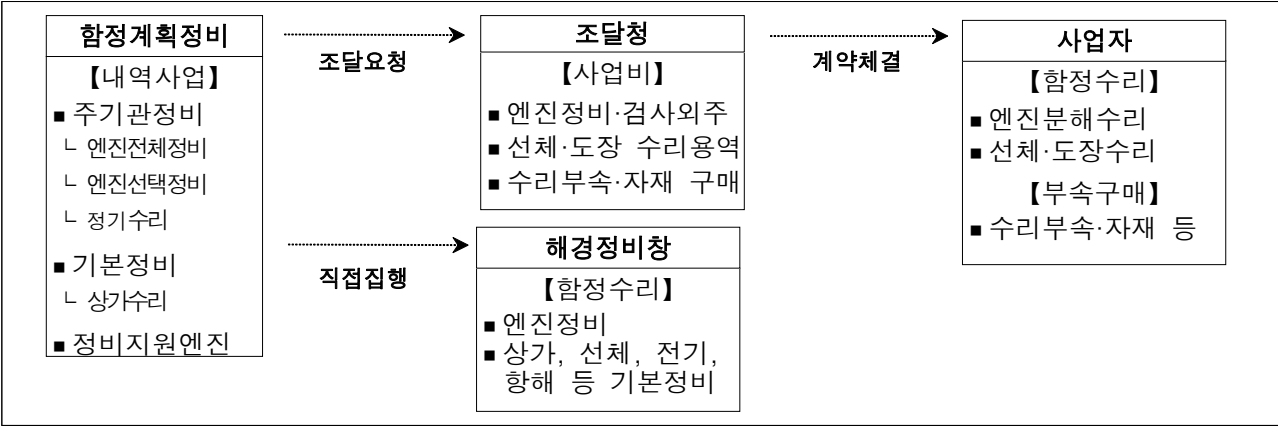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28,300	33,960	39,460	40,600	42,378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정비창)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경함정 승조원, 해·수산 관련 종사자, 일반국민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2) 정비창관리 (42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31	303
명칭	정비창운영	함정정비	정비창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정비창관리	2,774	3,222	3,213	4,379	4,215	993	3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리시설정비) 함정수리에 필요한 수리시설(상가시설, 수리공장, 각종 수리설비 등)의 정비를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시설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것임
- (수리장비구입) 함정수리에 필요한 수리장비(고압세척기, 이동정비차량, 엔진분해 특수공구)에 노후 교체 및 신규 구입비 지원하는 것임.
- (정비창운영경비) 해경정비창 기관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각 수리공장 재료비 등 운영경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플로팅도크 대체건조) 핵심 상가시설(플로팅도크) 노후로 인한 대체건조('23~25년, 총 3년 사업, 225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경찰청 함정정비규칙 제9조(정비기준)
-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칙

② 추진경위

- '00년부터 해경정비창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되면서 수리창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공공요금, 피복비, 유류비 등)
- 해경정비창은 '94년 現 다대포에 준공되어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함정정비 수리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함정수리사업 추진 중이나
- 가덕도해경정비창 확장이전 사업 무산에 따른 지금까지 지연 되었던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보강 및 시설물정비 등 사업비 가중

* 정비창 주요시설 현황

구 분	본 관	리프트 도크	플로팅도크	수리공장 9동	해송관 및 복지시설
구축년도	1994년	1993년	1985년	1994년	1997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638	3,066	2,866	3,213	4,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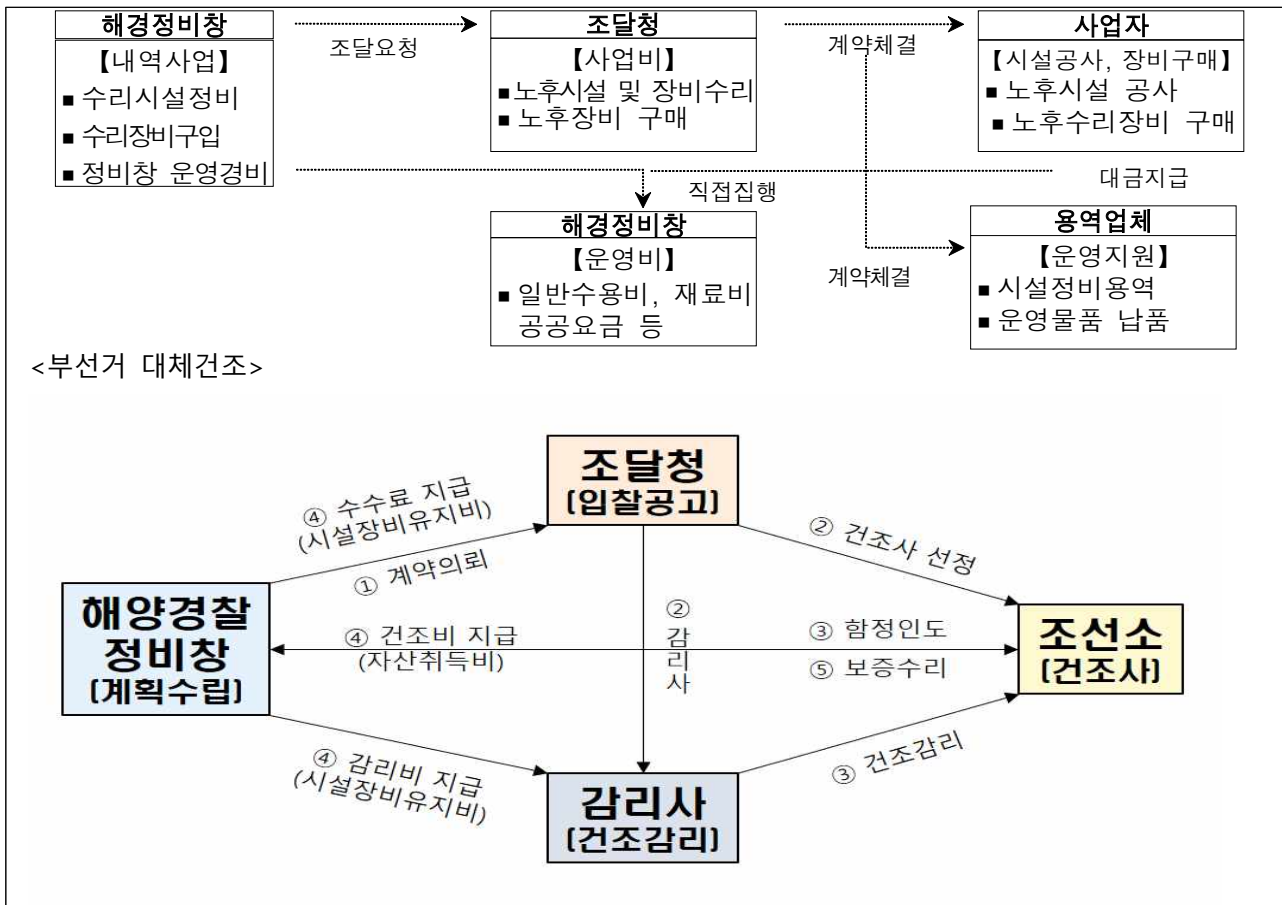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정비창)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경합정 승조원, 해·수산 관련 종사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3) 정책소통및감사감찰활동 (720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대변인		020	040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정책소통및감사감찰활동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정책소통및 감사감찰활동	1,568	1,566	△51	1,960	1,810	244	1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직·간접 홍보를 통한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
 - 정책설명, 온라인 기자단 운영, 노후 장비교체 등 정책 소통
 - 해양안전 방송국을 통한 정기 콘텐츠 제공과 해양안전 방송 송출
- 어린이 바다 안전체험을 통한 해양사고율 감소
 - 청소년, 아동에 해양안전 중요성 인식

- 해양경찰 임무 홍보 위한 체험관 관리·운영
- 해양쓰레기 저감 예방활동
 - 선원, 어업인, 해양 레저업체, 수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적법 처리, 수거 등에 대한 간담회, 교육, 홍보활동 전개
 - 공공기관, 민간 дай버의 수중 침적 쓰레기 수거활동 시 지원 강화
- 기관청렴도 제고 및 사정활동을 위한 감사·감찰
 - 자체감사 및 복무기강확립을 위한 사정활동
 - 각종 청렴 캠페인 실시 및 부패척결을 위한 민·관 상호 감시체계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국무총리 지시 2014-1호)
-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대통령령 제24146호)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4장(언론의 취재지원 등) (대통령령 제24988호)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개정)
- 공직자 윤리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개정)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7.26. 개정)
- 감사원법(법률 제13204호, 2015.2.3. 개정)
-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7787호)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8215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83, 2016.5.29. 개정)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대통령령 제28211호)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449호)
- 해양경찰법(법률 제16515호)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정책보도모니터링 시스템」 시행('04. 6. 1)
 - 국무총리훈령 제462호 정책품질관리규정('05. 7. 1)
 - 2009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 홍보」 시행('09. 4. 21)
 - '11년부터 해양경찰의 날을 12월 23일 창설기념일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인 9월 10일로 변경
 - '13년 해양경비법 개정에 따른 해양경찰의 날 법정기념일 격상
 - 2017. 7.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국정목표, 전략, 과제 실현을 위한 감사·감찰 업무 실시(국민이 주인인 정부·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2017. 8. 국내외 전체공관 '갑질'관련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해경청 갑질 전수조사 및 갑질 내부 금지규정 마련, 청렴고충 신문고 개설 운영 실시
- 대통령 공약사항, 국정과제, 정책협의회, 재조해경 5개년 계획 수립 등 내·외부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에 필요한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 주요정책, 업무계획 수립, 백서발간, 통계사업 등 기획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 도서구입 등 부대경비
- 국회법 의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 시 수반되는 인쇄비, 국회출입에 필요한 여비로 구성된 부대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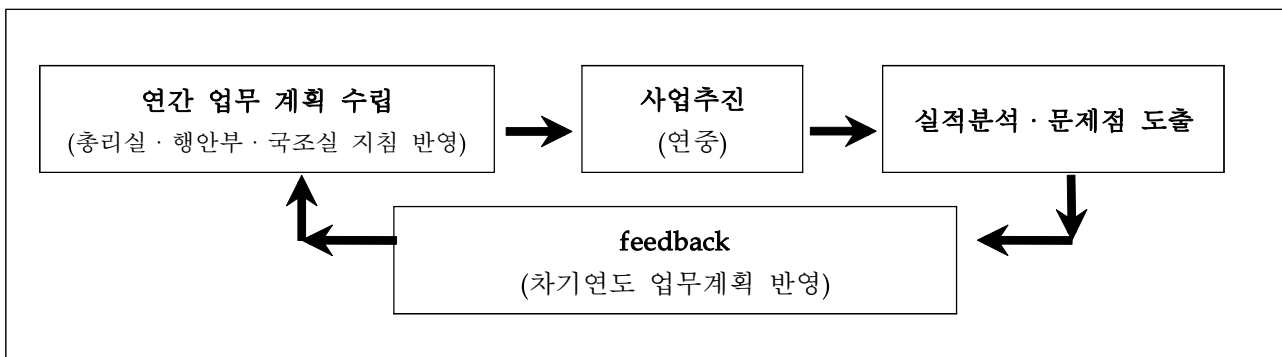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286	1,666	1,586	1,566	1,810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및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4) 총무활동 (720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020	040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1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총무활동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총무활동	8,514	14,536	14,621	11,305	11,104	△ 3,432	△ 23.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총무활동지원) 총무활동은 운영경비로써 해양경찰 주요 정책수립 및 기획활동, 행사·소속기관 주요정책 활동사항 운영지원, 민원인 등 대국민 지원하는 사업
- (기획활동지원) 해양경찰 주요 정책수립·추진, 농해수위·예결위·법사위 및 국정감사 등 기획·국회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사업
- (행정법무지원) 해양경찰청 내 조직·혁신·법무·성과관리 등 해양경찰의 인력, 법령,

규칙 등 조직 운영을 보조 하고 지원하는 사업

- (의무경찰관리) 국방의 의무를 위해 복무하는 의무경찰에 대한 급식, 의료, 보급, 사기진작, 복지 등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 경찰공무원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보안업무규정 제32조(보호구역), 제35조(보안측정)
-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제출요구)
-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대통령령 제24146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법률 제14839호)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개정)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대통령령 제28211호)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449호)
-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521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법률 제14839호)
- 병역법 제3절 전환복무
- 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설치 및 임무)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정책보도모니터링 시스템」 시행('04. 6. 1)
- 국무총리훈령 제462호 정책품질관리규정('05. 7. 1)
- '13년 해양경비법 개정에 따른 해양경찰의날 법정기념일 격상
- 대통령 공약사항, 국정과제, 정책협의회, 등 내·외부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에 필요한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 주요정책 업무계획 수립, 백서발간, 통계사업 등 기획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 도서구입 등 부대경비
- 국회법 의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 시 수반되는 인쇄비, 국회출입에 필요한 여비로 구성된 부대경비

-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중심 인력 충원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활동
- 조직 정체성 확보를 위한 해양경찰청 조직법 제정 및 우리청 소관 법령 제·개정, 체계적 입법관리 등을 위한 법무활동
- 해경청 대내외 소통 및 조직문화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성과관리 활동 등을 위한 여비 및 부대경비
- 2009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 홍보」 시행(‘09. 4. 21)
- 해양경찰청 대·내외 소통 업무 추진을 위한 정책소통활동 등을 위한 경비
- 1970. 12. 31. :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의거 전투경찰순경을 운용하면서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서비스 지원
- 2016. 01. 25.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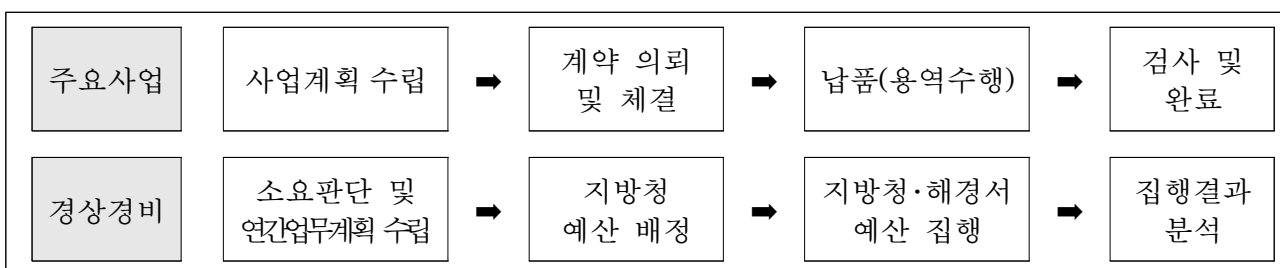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2,217	2,779	8,880	14,621	11,10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및 국민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5) 복지역량강화 (720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2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복지역량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복지역량강화	6,023	6,110	6,110	5,885	5,885	△225	△3.7

나. 사업설명자료

- 1) 사업목적·내용 : 해양경찰 전직원 복지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의 효과
적인 혜택, 편의를 위한 유지 및 안전보전 관리 등 복지역량강화 업무
- (직원복지 지원) 해상경비, 수색·구조 및 치안확보에 전념하는 해양경찰 직원의 사기

진작과 고위험 임무 수행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치료 등을 위해 전직원 대상 심리상담, 퇴직지원, 수련원, 특수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직원숙소 관리) 전국권 인사발령으로 시·도를 넘어 원거리 이동하는 직원(매년 1,400여명)의 안정된 주거생활 보장 및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비연고자 대상으로 숙소를 지원하는 사업
- (보육시설 지원) 가족 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 생산성 제고 및 근무 만족도 증가를 위해 5개소(본청,서해·남해·동해·제주지방청) 어린이집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 (안전·보건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교육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의료지원)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의2(특수건강진단)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9조(직원숙소 지원)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1조(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② 추진경위

- 202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 2019~ PTSD 위험군을 대상으로 산림청 휴양림 활용,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실시
- 2014~ PTSD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의무대상자 및 희망자 선정 후 집중 심리상담 실시
- 2014~ 합정·파출소·분석실 등 특수부서 야간(교대)근무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 2014~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대상 해양경찰 취업지원센터 운영
- 2010. 3. 2.~ 직장내 보육시설 5개소 개원·운영
- 1981~ 비연고 무주택자 직원숙소 지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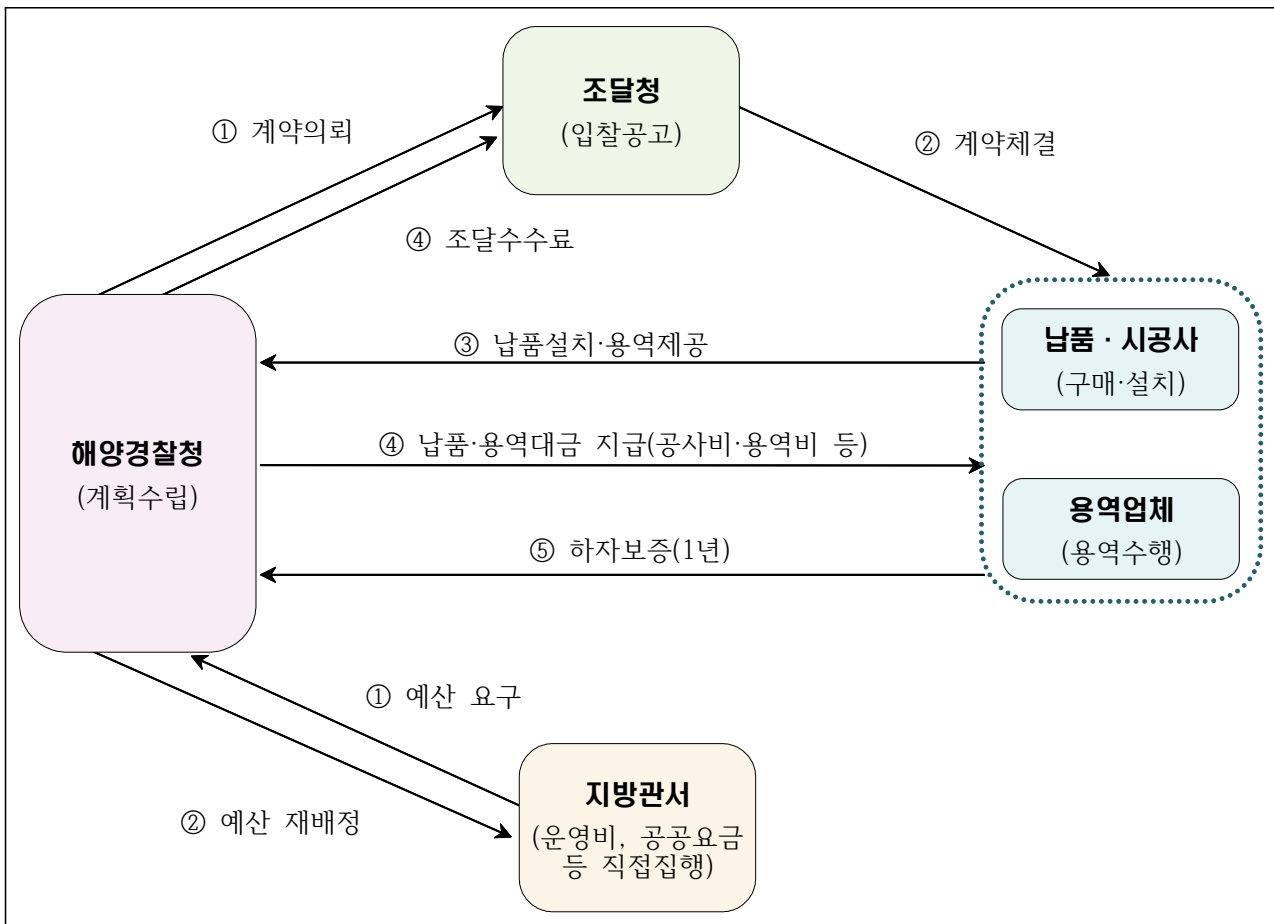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4,812	5,646	6,074	6,110	5,885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6) 재정관리활동 (720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3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재정관리활동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재정관리활동	5,649	6,331	6,273	6,656	6,656	325	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속기관지원)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지원 등
- (예결산업무지원) 예결산업무 대응 및 재정성과관리 자료 인쇄료, 차량임차료·유류비 지원 등
- (예산운영지원) 예산업무, 재정성과관리, 국유재산관리 등 예산기능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지원
- (연구용역지원) 전년도 결산 재무회계 및 연간 재무회계 중간검토 관리용역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 「공무원 여비규정」
-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 및 제3장 결산
- 「국회법」 제5조의 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및 제54조 제1항
- 「해양경찰청 공무원 근로자 등 관리 규칙」 제41조(보수)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2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 예산편성, 결산, 국유재산관리 및 재정성과관리 등 수행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4,508	5,641	5,843	6,331	6,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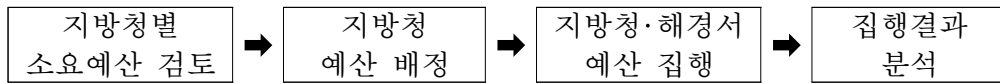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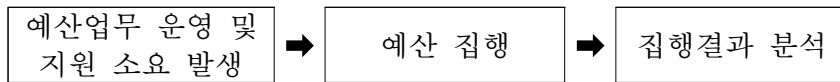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소속기관지원



- 예·결산업무지원 및 예산운영지원



- 연구용역지원



사 업 명						
(27) 인재선발양성지원(7203-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4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인재선발양성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인재선발양성지원	1,505	1,752	1,682	2,839	2,839	1,087	6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우수한 전문인력 선발 및 현장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훈련 운영을 통해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 직무역량 및 행정발전 향상을 도모
- 현장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운영하고, 우수 공적에 따른 승진·포상 등을 통해 소속공무원의 사기증진 도모

- (교육훈련지원)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교육훈련 및 자체 현장부서 교육훈련 집행·점검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채용인사지원) 해양경찰 채용·승진시험 운영,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포상, 발령, 승진 등 인사업무 총괄 지원
- (이러닝콘텐츠유지개발) 해양경찰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직무중심의 이러닝콘텐츠 지속개발·유지
-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유지운영) 해양경찰만의 특수한 인사체계(특정직중심, 순환근무, 원소속 등)에 적합한 인사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 (사격장 안전 시설·장비보강) 경찰관 사격훈련시 총기오발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비인 방탄조끼 보급 및 본청 사격장 노후(17년경과)에 따른 시설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및 제28조(직장훈련계획)
- 경찰공무원법 제8조(신규채용), 제15조(승진) 및 제22조(교육훈련)
- 해양경찰법 제19조(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임용권의 위임), 제9조(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제25조(시험의 방법), 제60조(승진심사), 제74조(승진시험 실시의 원칙)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제20조(상시학습 운영), 제21조(현장부서 훈련 실시), 제27조(교육훈련비의 지급)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 및 제9조(역량평가)
- 공무원인사운영규정 제45조의3(역량평가) 및 제63조(상시학습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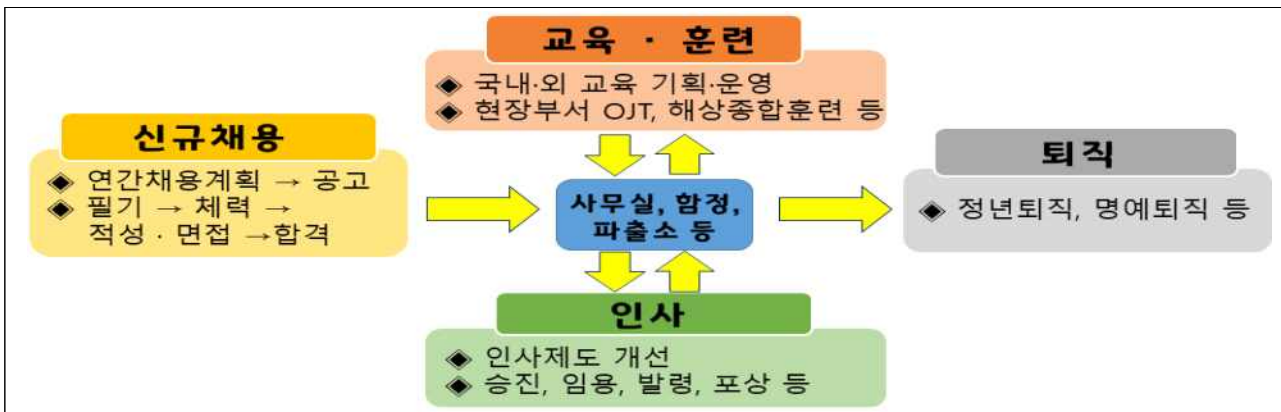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급변하는 교육훈련 환경에 적합한 교육훈련 체계 및 시스템 필요
-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비대면 교육환경으로 전환
-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직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 확대
- 다양한 해양사고 대응을 위해 전문구조 역량향상 교육훈련 필요
- 공무원의 자기학습 지원, 승진대상자의 객관적인 역량평가 요구
- 우수인재의 공정한 선발을 위한 효율·체계적인 채용업무 지원
- 해양치안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확보를 위한 선진국가기관간 교류협력 및 교육훈련 강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8) 치안및외근활동지원 (7203-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5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치안및외근활동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치안및외근활동지원	39,593	45,434	45,434	51,516	51,516	6,082	1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최일선 대민접점 근무 경찰관 대민봉사 및 민생치안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
- 함정요원의 사기진작 및 지휘, 통솔력 강화를 위한 함정지휘관 품위유지비
-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정이하 경찰관 처우개선
- 해상테러 및 구조 등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특공대·구조대 활동비
- 함정근무자 중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하는 특수기동대 활동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부산 동의대사태('89.5월) 이후 '90년부터 특별방범수당 지급
- '01년 치안활동수당으로 명칭 변경, 지급금액 17만원으로 인상(7→17만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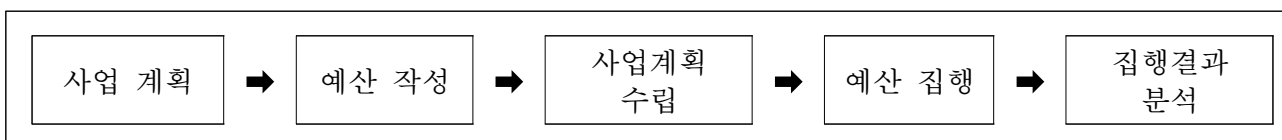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35,563	37,822	41,036	45,434	51,51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0) 교육원지원 (7203-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7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교육원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교육원지원	12,950	13,397	13,313	11,675	10,838	△2,559	△19.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운영 및 시설관리) 교육원 청사 시설(34개동 건축물) 및 규모(대지 70만평) 제반시설 체계적 관리·유지보수 실시에 대해 연간 지출 추이 등을 종합적 감안하여 추정, 각 변수들을 곱하여 지원규모 산출, 일용직근무자에 대한 임금
- (교육훈련 시설 장비 유지) 新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훈련장, 실습장 등에

대한 장비구입 및 유지에 대한 지출 추이 등을 종합적 감안하여 추정, 각 변수들을 곱하여 지원규모 산출, 시뮬레이션훈련장(11,500백만원×2.6%) 및 가상구조훈련장(3,525백만원×3%) 등 교육훈련실습장에 대한 유지보수 산출

- (부대시설 지원)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활동 등의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연간 지출 추이 등을 종합적 감안하여 추정, 각 변수들을 곱하여 지원규모 산출, 현장임무에 적합한 대응기술·장비개발을 통한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 지원 산출
- (교육훈련 운영 지원) 현장중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운영에 대한 연간 지출 추이 등을 종합적 감안하여 추정, 각 변수들을 곱하여 지원규모 산출, 연간 교육인원에 대한 1일 급식비 13.5천원(1식 4.5천원) 및 드론보험료(책임보험 1회×16백만원), 생활실 침구세탁(침구세탁 60만원×12월×6동)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산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인재개발)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 경찰공무원법 제22조(교육훈련)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7조(교육훈련 실시 의무)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교육원 교육훈련의 구분)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추진경위

- '04. 1. 29. 해양경찰학교 직제신설 공포(대통령령 제18260호)
- '06. 1. 신입·기본과정 교육운영 일원화(경찰종합학교→해양경찰학교 이관)
- '08. ~ 경정·경감 기본교육 이관(경찰대학→해양경찰학교)
- '13. 11 '해양경찰학교'에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명칭 변경(대통령령 제25244호)
- '13. 11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의거 해양경찰교육원 신축 이전(천안→여수)
- '14. 3. 31.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준공
- '14. 11. 19.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변경
- '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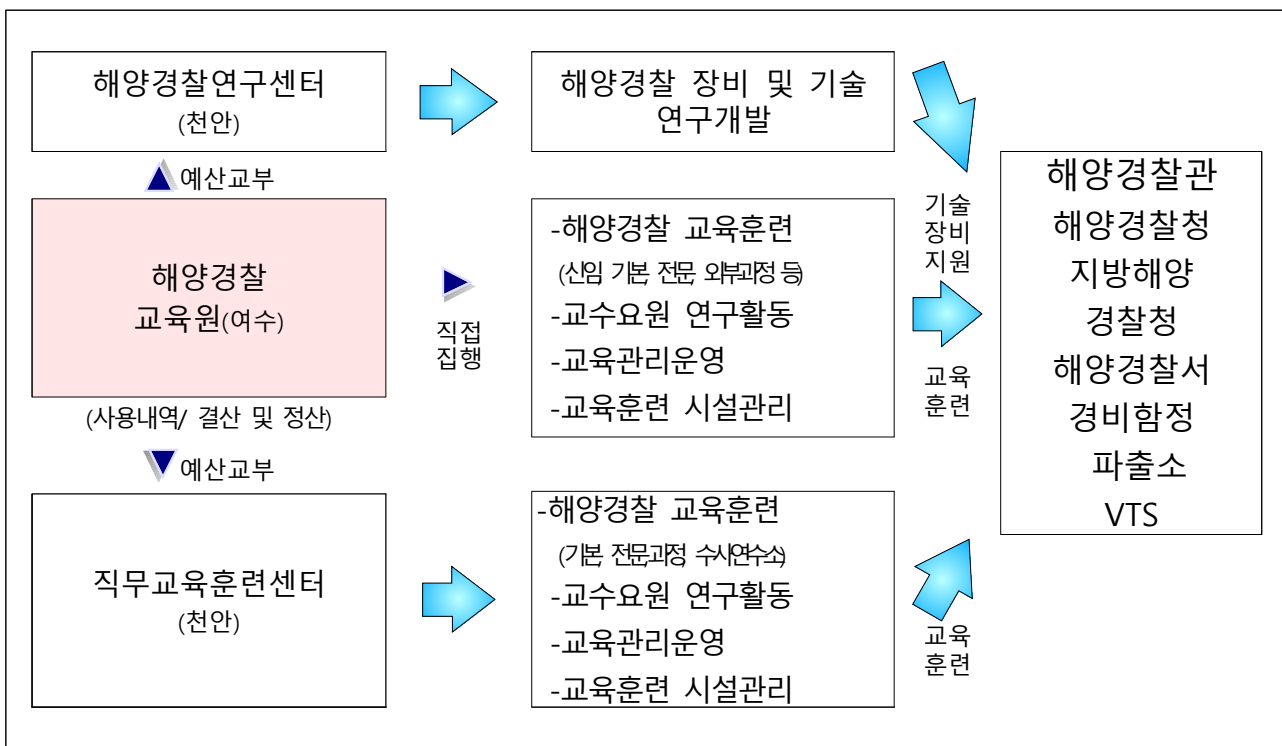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1,104	12,473	13,315	13,313	10,838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교육원 교직원 및 교육생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1) 정보통신보안활동 (7203-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8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정보통신보안활동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정보통신보안활동	733	704	704	683	683	△21	△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보통신보안활동)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활동을 강화하여 보안 위협요소를 탐지 및 제거하고 전직원 대상 정보보안 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한 보안의식 제고
- (통신보안장비유지) 정보통신망 암호장비와 정보보호시스템을 보강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운영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여 정보유출 사고 예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정보원법(법률 제12948호) 제 3조(직무)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조(책무)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 제4조(사이버안전 확보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정보통신 보안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보안활동 강화 및 암호장비와 정보보호시스템 지속적 도입 등 통신보안에 소요되는 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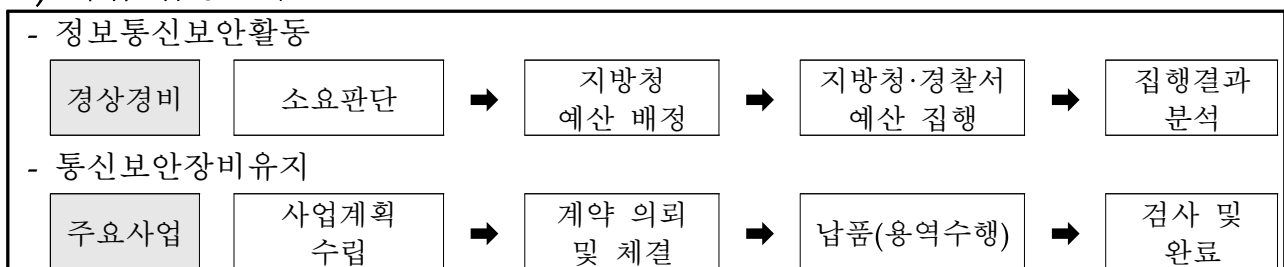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586	946	752	704	68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본청 등 27개 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2) 국제협력강화 (7203-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9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국제협력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국제협력강화	157	457	424	298	298	△159	△3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협력지원) 주한외국공관 간담회 등 국제행사 지원 및 국제정세 수집·분석을 통한 국제해양분쟁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한 국제협력과 운영
- (국제회의추진) 국제기구 및 외국 해양치안기관과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선진 해양 경찰제도 발전 및 국내외 해양사건·사고 대응력 강화
- (해외주재관지원) 재외국민 보호, 해양재난사고 발생시 주재국과의 수색구조 협력 등을 위해 해외주재관의 귀부임 여비 및 이전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경찰법 제14조(직무)제5항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 다자간 협력약정서(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 외국 해양치안기관과 업무협약(16개국 21건)

② 추진경위

- '05. 07. 22. 국제협력관(경무관) 신설
- '20. 01. 01. 기존 국제외사활동 내역사업에서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리
- '21. 01. 14. 직제개정에 따라 국제정보국 신설(국제정보국 국제협력과)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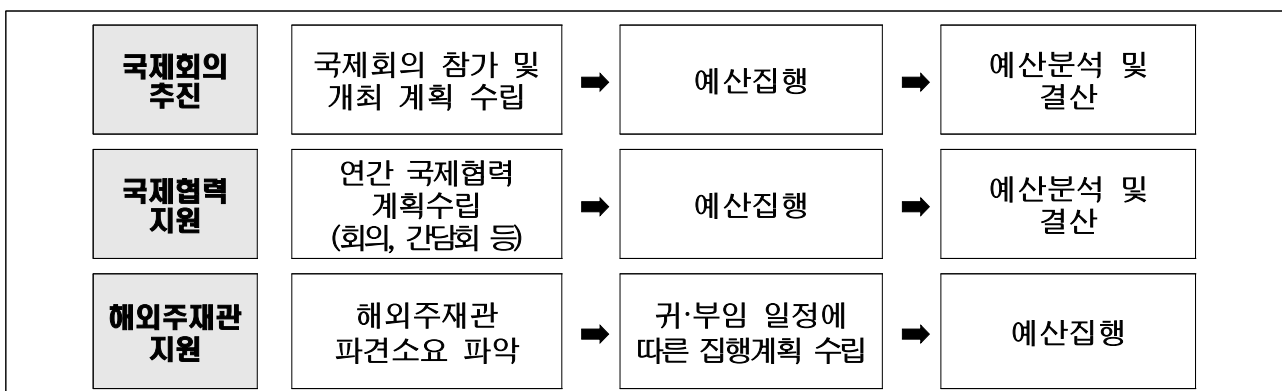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	203	187	424	298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3) 치안지원인력운영 (7203-3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직속부서		020	040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14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치안지원인력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치안지원인력운영	-	2,029	2,029	12,741	12,741	10,712	52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사방호) 국가보안시설(나급)인 본청·소속 해양경찰관서 평시·비상 사태시 효과적인 방호 및 24시간 민원인 안내 및 응대업무를 위한 인원 필요
 - ※ 주·야간 청사 정문 및 본관 로비근무(무기탄약고, 비밀·수사관련 자료 등 유출방지)
- (기타 공무직) 그 간 분리 운영된 해경 공무직 인건비 사업을 통합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및 임금 정책 일원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제1조(목적) :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국가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함

② 추진경위

- 2022년 청사방호 인력 본청, 지방청 등 10개소 총 84명 채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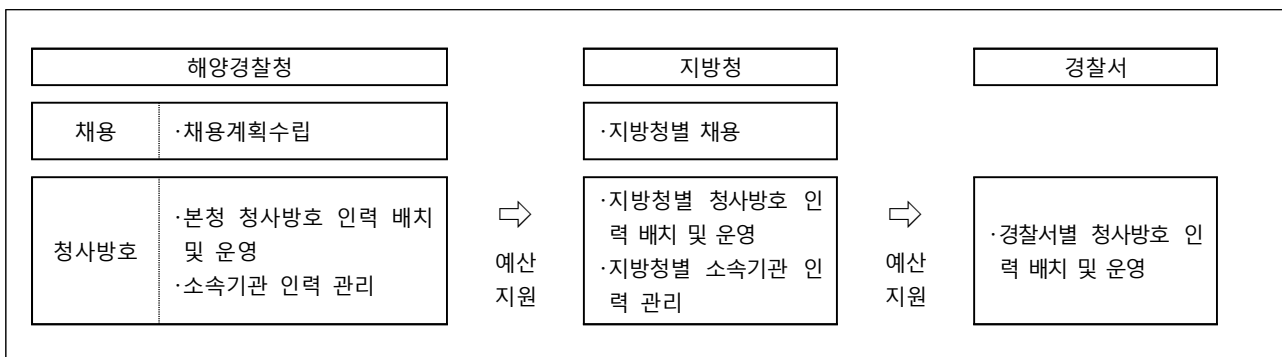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	-	-	2,029	12,741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을 방문하는 민간인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4) 청사관리 (7237-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직속부서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7	30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시설개선	청사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청사관리	5,011	7,355	7,324	6,716	6,716	△ 639	△ 8.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사 개·보수 등) 노후청사 개·보수비 지원 등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
- (청사 임차료) 임시청사 임차료 지급
- (청사 환경미화 등) 청사 외주관리용역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 (청사 집기류 구입 등) 소속관서 신축·노후 집기류 구입 및 이사비용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 제2조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전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추진경위 - 노후청사 개·보수, 임차료, 시설물관리 등 매년 지속적으로 소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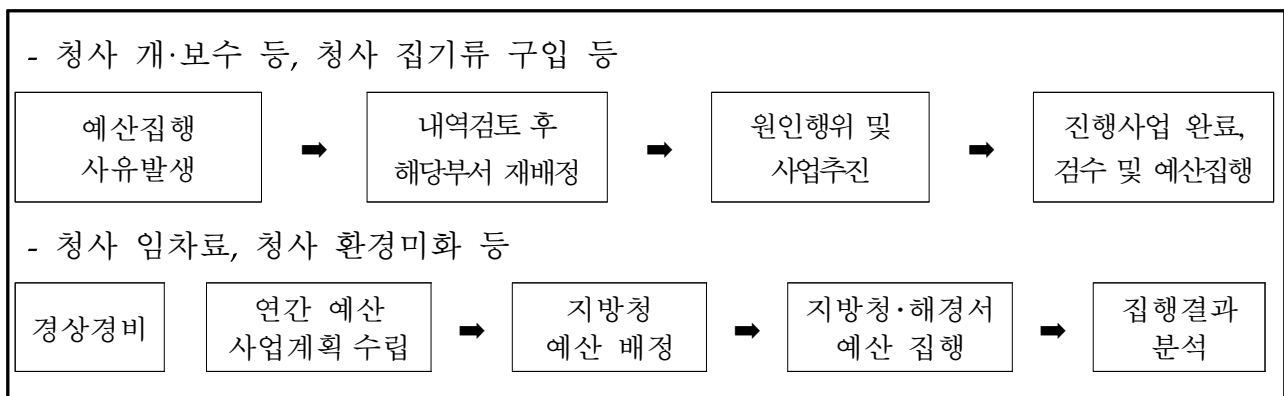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5,912	4,805	5,061	7,355	6,71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5) 해양경찰정보화관리(정보화) (7238-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8	30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정보화관리	해양경찰정보화관리(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해양경찰정보화관리 (정보화)	18,945	19,865	19,844	19,930	17,602	△2,263	△1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시스템 구축) 일원화된 데이터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기술 인프라 확충으로 지식정보 중심의 디지털 해양경찰 구현
- 미래 환경변화 및 정책수요에 맞춰 해양 데이터를 수집·분석·공유·활용하기 위한 해양경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공공 클라우드로 단계적 전환하여 운영예산 절감, 긴

급상향 대응 등 운영 효율화 도모

· 레저면허·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등 대국민 행정 수요에 대응한 모바일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편의 도모

- (기반 정보화) 전국 해양경찰 관서 전용회선 사용료 지원 및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 (정보화 지원) 본청, 5개 지방청, 20개 해양경찰서 등 전국 해양경찰 정보통신 활동 업무지원 및 기본적 행정 사무용품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 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5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국가기관 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 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 치안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촉진) 정부는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촉진)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의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교통·복지·환경·재난안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지능정보사회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
- 업무의 전자화 및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정보기술 아키텍처 수립
- 신기술 적용을 위한 업무고도화 및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 안전하고 성숙한 정보사회 구현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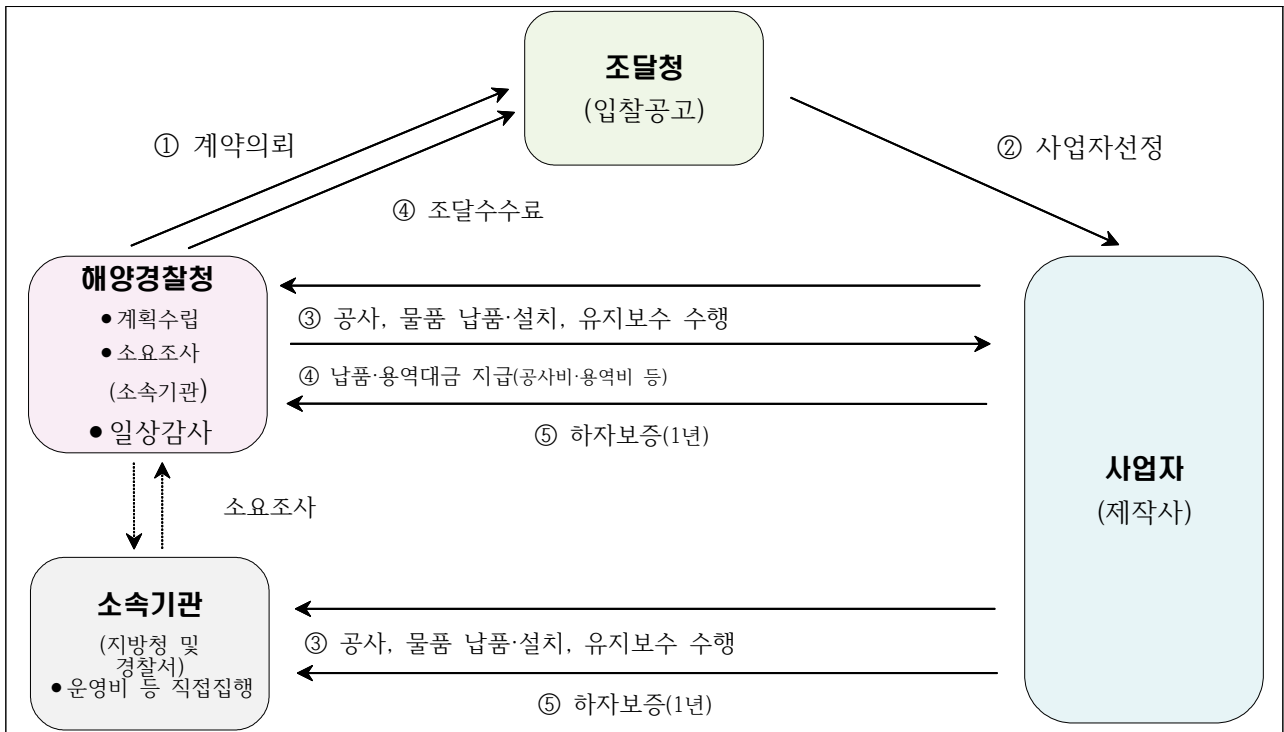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3,337	16,691	18,739	19,865	17,602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직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6) 해양경비지원시스템구축관리(정보화) (7238-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경비국		020	024
명칭					해양경찰행정 지원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8	301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정보화관리	해양경비지원시스템구축관리(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해양경비지원 시스템구축관리 (정보화)	-	2,050	2,050	3,066	2,320	270	13.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AI해양경비지원시스템구축)

·한정된 경비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운용하기 위해 AIS, V-PASS, 레이더, 위성, VTS 등 다양한 감시자산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예측하여 객관적인 경비 정보를 각 경찰관서 경비과, 상황실, 현장 경비함정 등에 제공

- 다양한 감시자산으로부터 수집되는 상이한 형태의 대용량 데이터를 무중단 연계 전송할 수 있는 프로토콜 및 개방형 분산 위치정보처리 체계 자체 개발을 통한 정보연계 처리 체계 구축
- (통합신고처리시스템 개선)
 - 우리나라 전해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 및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통합신고 처리 시스템 기능개발 및 도입(실시간 공유기능, 위치조회 절차 개선 등) 사업 고도화
- (국제해양정보시스템 개선)
 - 해양안보·국제범죄 등 정보교환을 통해 해양분쟁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 및 주변국 해양력 강화 추세에 따른 동북아지역의 지정학적 경쟁 구도 속에서 위기대응능력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경찰법 제14조 (직무)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해양경찰법 제16조(해양안전 확보 노력)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 보장 및 사고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술, 해양구조방식 등의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경비법 제6조(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른 해양치안 수요 분석에 관한 사항

-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 해양경비 실적이나 치안여건 등을 분석하여 해당 연도의 중점 경비대상과 달성목표 등을 포함한 연간 해양경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구조본부의 장은 조난사고와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 기존 경비구역에서의 이동은 함장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효과적인 상황 대응을 위해 객관적 정보 제공을 통한 한정된 경비세력의 효율적 운용 방안 요구
- 무인기, 위성, 스마트통합지휘체계 등과 연계하여 해양상황을 인식하고 분석·판단할 수 있는 GIS 기반 실시간 분석시스템 구축 시급
- AI 기술이 보편화 됨에 따라 분석·활용없이 삭제 처리 되는 실시간 위치정보, 위성영상 등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ICT 기반 조성 필요

- 추진경과

- 인공지능형 해양경비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ISP 예산 확보 및 ISP 수립('21.6.)
- 2022 AI 해양경비지원시스템 구축 예산 2,050백만원 편성
- 국정과제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 실천과제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확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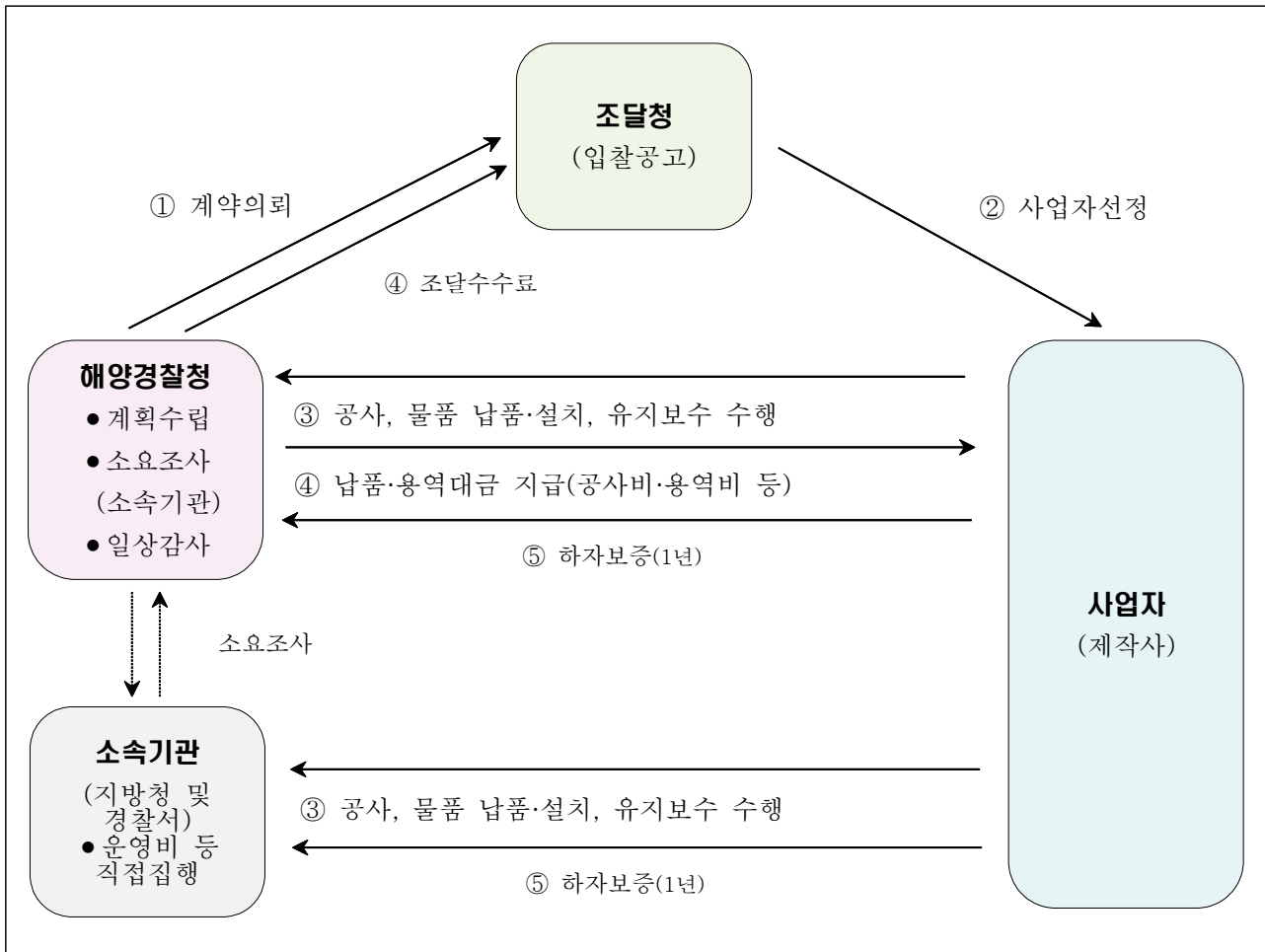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	-	-	2,050	2,32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전국 29개 해양경찰관서 경비과, 상황실, 경비합정 353척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7) 해양안전시스템구축관리(정보화) (7238-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안녕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7238	302
명칭	구조안전활동	해양경찰정보화관리	해양안전시스템구축관리(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해양안전시스템구축관리	-	834	834	2,732	2,732	1,898	22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시스템 구축)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해양구조·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등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 관리·개선 추진
- V-Pass시스템 안정적 운용을 위한 시스템 이중화
- 해상의 전복·화재 사고 등으로 발생한 다수사상자의 중증도를 알고리즘에 의해 신속·정확하게 분류 및 환자의 정보를 실시간 확인 가능한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 경비함정 조난자 위치발신시스템을 IOT 기반 스마트 위치화 하여 휴대성, 편의성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난자 구조활동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출입항신고)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선박패스 시스템 운영 및 정보의 이용)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출항·입항 신고 등을 관리하기위해 선박패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수상구조법」 제7조(구급대의 편성·운영) 구조본부의 장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양경비법」 제18조의1(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 해상검문검색 및 추적·나포시 선박 등을 강제 정선, 차단 또는 검색하는 경우 경비세력에 부수되어 운용하는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② 추진경위

사 업 명
(38) 골든타임사수를위한수색구조기술개발(R&D) (7239-6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스마트 해양경찰추진단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11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골든타임사수를위한 수색구조기술개발(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골든타임사수를 위한수색구조기술 개발(R&D)	7,763	9,025	9,025	6,759	6,759	△ 2,266	△ 2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천후 수색구조 및 생존성 향상 기술개발) 다양한 해상사고 상황에서 수색구조 기술 및 요구조자의 생존가능성·안전 확보기술 개발
- (해양 수색구조 정보지원 기술개발)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및 사고예방을 위한 사고위험 예측기술 및 실시간 정보지원 기술 개발
- (연안해역사고예방 및 신속한 구조활동 지원기술개발) 다양한 연안환경(갯벌, 갯바위, 양식장 등)에서 운용 가능한 구조보트, 연안안전활동 위험도평가·예측체계 개발을 통한 연안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현장 이동시간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① 구조본부의 장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편성·운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양경찰구조대: 조난사고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수색구조 활동을 위해 두는 구조대로서 해양경찰서마다 1개 이상 편성·운영. 다만,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또는 해양특수구조대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양경찰구조대를 편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수면에서의 대형 조난사고, 화재선박의 인명구조 등 특수구조 상황에서 필요한 구조활동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해상 인명구조 종사자의 훈련을 위하여 두는 구조대로서 중앙구조본부에 편성·운영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3조(기술의 개발·지원)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년, 일몰 후속사업으로 재기획하여 신규사업으로 반영
- ('18년 일몰) 「해양구조기술개발(R&D)」 일몰사업 지정
- ('18.1월) 「해양경찰청 R&D 중장기 전략수립 기획연구」를 통해 신규사업 기획
- 해양재난 사고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과제 연차별 착수 시행
- ('19년) 전복선박의 선체유지 및 강제 복원 기술개발 등 3개 신규과제 착수
- ('20년) 해양경찰 구조대원 스마트 지원장비 개발 등 3개 신규과제 착수
- ('21년) 해양 응급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지능형 휴대용 현장응급의료 키트 개발 등 2개 신규과제 착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672	4,850	7,763	9,025	6,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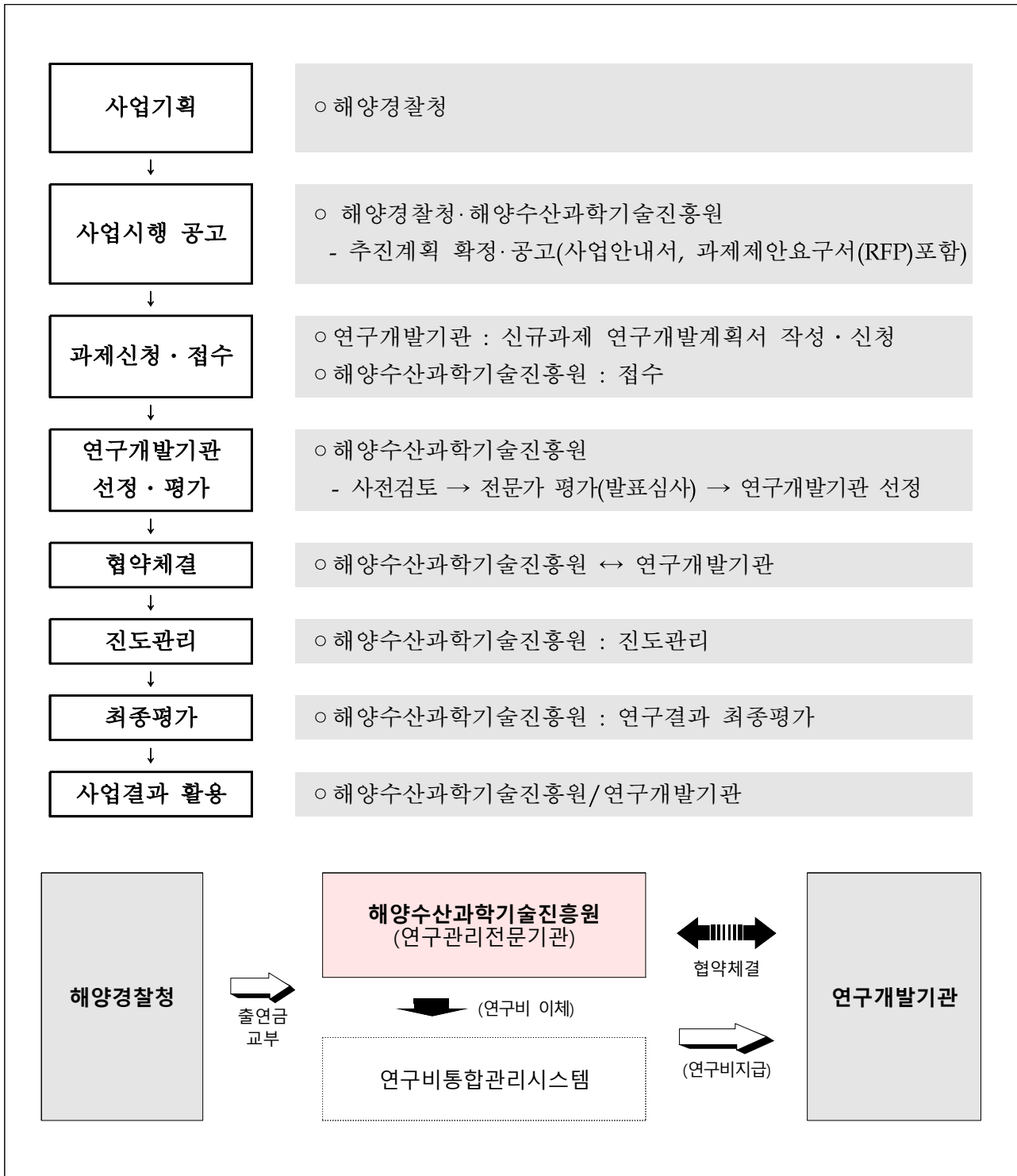
- 기타 : 3개 내역사업 5개 과제('23년 기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양관련 종사자, 전국민, 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천후수색구조 및 생존성향 상기술훈발	출연	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	1,291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1조(전문기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해양수색구조 정보지원기술 개발	출연	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	3,75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1조(전문기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연안해역사고 예방및신속한 구조활동지원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	1,718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1조(전문기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9) 불법선박대응을위한장비선진화기술개발(R&D) (7239-6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스마트 해양경찰추진단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12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불법선박대응을위한 장비선진화기술개발(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불법선박대응을위한 장비선진화기술개발 (R&D)	4,686	3,794	3,794	2,216	2,216	△1,578	△4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불법선박 현장 대응장비 선진화 기술) 불법선박 저항형태에 효과적 대응 및 단속대원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개발 지원
- (불법선박 등 해양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법과학 감식분석 지원기술) 해양범죄에 대한 과학적 증거수집 기술 및 해양에서의 특화된 수사기법 개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8. 1월, 「해양경찰청 R&D 중장기 전략수립 기획연구」를 통해 신규사업 추진전략 수립
- '19년, 일몰사업 「해양오염및해양경비지원기술(R&D)」의 후속사업으로 신규사업 추진
 - ('19년) 불법선박 정선을 위한 전자적 기술개발 등 4개 신규과제 착수
 - ('20년) 위성연계 접경수역 선박 모니터링 및 분포 예측체계 개발 1개 신규과제 착수
 - ('21년) 고래 불법포획 및 유통단속을 위한 DNA 감식기술 개발 1개 신규과제 착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2,266	4,091	4,752	3,794	2,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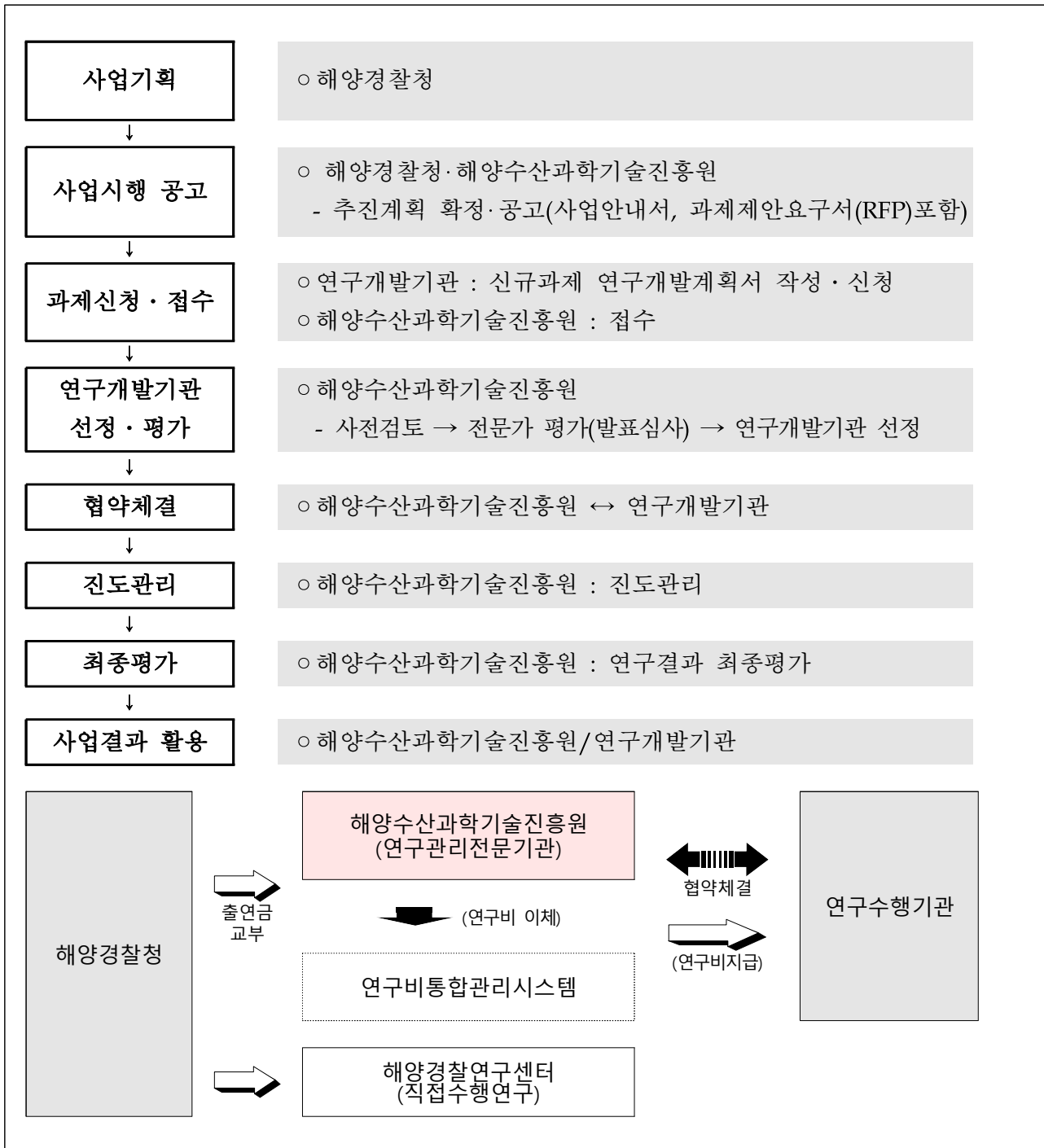
- 기타 : 2개 내역사업 3개 과제('23년 기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양관련 종사자, 전국민, 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불법선박현장 대응 장비선 진화기술	출연	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	1,577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1조(전문기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불법선박등해 양범죄혐의입 증을위한법과 학감식분석지 원기술	출연	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	26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1조(전문기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0) 방제단계별대응역량강화기술개발(R&D) (7239-61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스마트 해양경찰추진단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13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방제단계별대응역량 강화기술개발(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방제단계별대응역량 강화기술개발(R&D)	5,604	6,357	6,357	6,197	6,197	△160	△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의사결정지원 및 오염현황 파악기술 개발) 해난선박(좌초, 충돌)의 선체상태 및 해양오염 확산범위 등을 신속·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 (해양오염물질 처리·조치 기술 개발) 해상과 해안의 환경 및 오염물질 사고특성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회수 및 처리하는 해양오염물질 처리·조치 기술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대응하거나 해양 및 해양생태계를 복원·개선하고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에 필요한 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가긴급방제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추진경위

- '19년, 일몰형 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사업 추진
 - ('18년 일몰) 「해양오염 및 해양경비지원기술개발(R&D)」 일몰사업 지정
 - ('18. 1월) 「해양경찰청 R&D 중장기 전략수립 기획연구」를 통해 신규사업 추진전략 수립
- 해양오염 사고시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과제 연차별 착수 시행
 - ('19년) 해양오염방지 긴급구난 의사결정 지원기술 등 2개 신규과제 착수
 - ('20년) 해난사고시 수중 유류 이적기술 개발 등 1개 신규과제 착수
 - ('21년) 해상유출 저유황유 오염방제기술 및 장비개발 등 1개 신규과제 착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100	3,311	5,604	6,357	6,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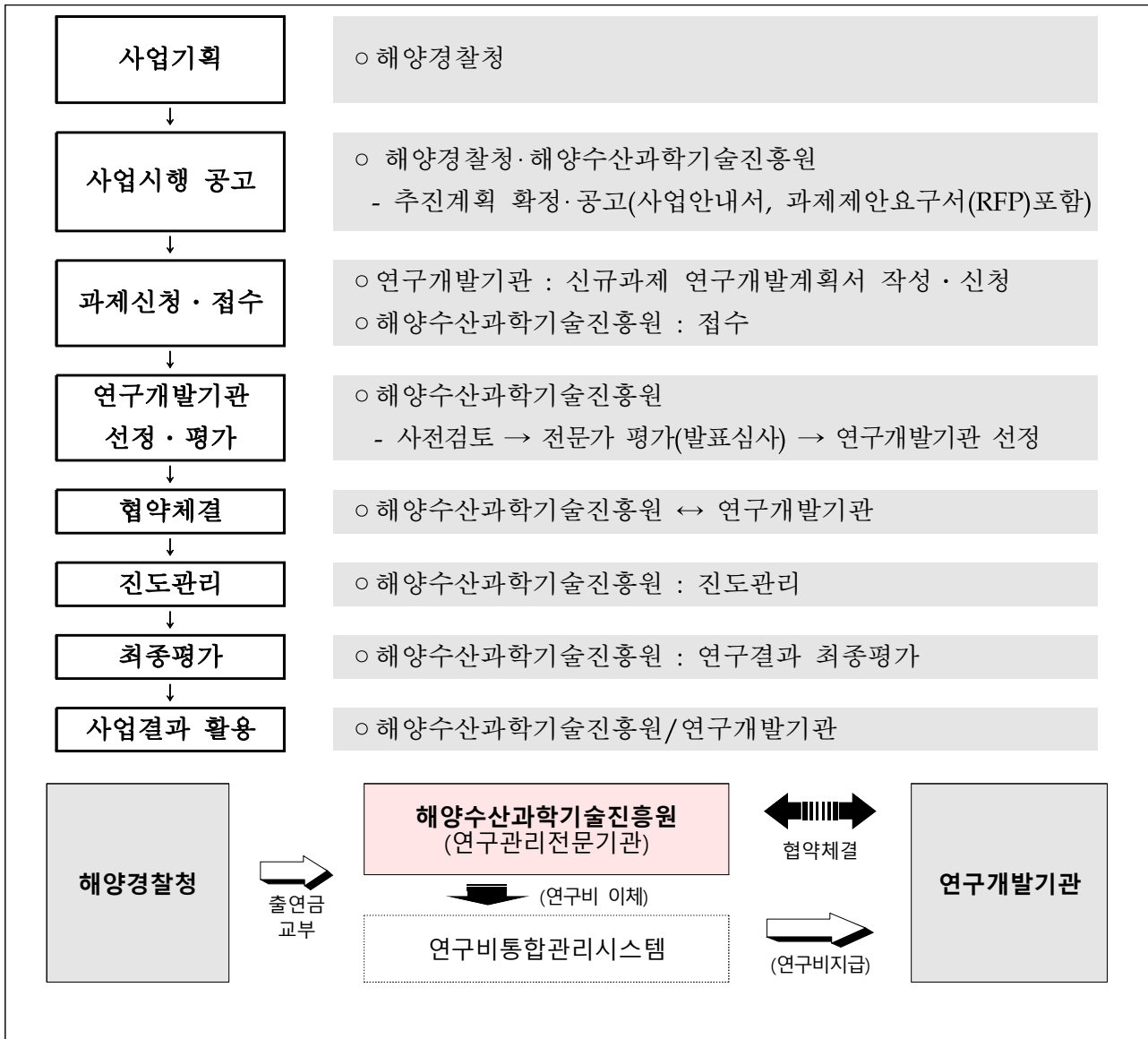
- 기타: 2개 내역사업 5개 과제('23년 기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양관련 종사자, 전국민, 연구기관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의사결정지원 및 오염현황 파악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732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1조(전문기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해양오염물 질 처리·조치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465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1조(전문기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1)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R&D)(해경청) (7239-6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 추진단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15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정지궤도공공복합 통신위성개발(R&D)(해경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정지궤도공공복합 통신위성개발 (R&D)(해경청)	1,575	5,342	5,342	7,500	7,500	2,158	4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 재난 및 재해 위기상황에 대비한 음영 없는 대국민 공공재난통신 서비스 제공, 홍수 예방감시 및 정밀 위성항법 보정서비스 고도화, 위성통신 미래 선도기술 확보 및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독자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개발

-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광대역 통신탑재체 개발을 통해 신속한 해양구조업무 및 주권수호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공공재난 위성통신망 확보 및 해양정보 융합플랫폼 구축기반 마련을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에 필요한 자원(財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우주물체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11.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3조(정부부처의 역할 및 책임) ①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은 참여부처의 공동개발사업이며, 각 부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는 위성개발사업의 총괄 부처로서 위성개발을 총괄·관리하며, 시스템, 본체 및 위성관제시스템 개발을 담당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과정책국),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탑재체별 개발을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과정책국)는 광대역통신탑재체(Ka대역) 개발, 환경부는 정보수집탑재체 개발, 국토교통부는 위성항법보정탑재체 개발을 담당한다. 환경부와 해양경찰청은 광대역통신탑재체(Ka대역) 개발에 참여한다. ② 참여부처의 장은 해당 위성개발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출연금 지원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위성개발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국가우주위원회, '18.2)

- 재해·재난, 비상사태 등 위기시 통신환경 안정성 보장, 위성통신방송 분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통신방송 정지궤도위성 확보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법 제16조(해양안전 확보 노력)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대응을 위하여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지휘·통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5년 광역구역에서의 해상지휘통신망 구축을 위해 위성통신망 사업 추진
 - 총 8차에 걸쳐 위성통신망 설치 사업 추진('05 ~ '14, 354억원)
- 현재까지 100톤 이상 함정 115척에 대한 위성통신망 구축 운영 중
 - 원활한 통신망 운영을 위해 통신용량(대역폭) 지속 확대('05년 14.8MHz→'21년 120MHz)
 - 사용 대역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속도저하, 끊김 현상 발생
-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 총괄기획위원회('19.6월~9월)
- 대용량 공공재난위성통신망 확보로 안정적인 해상구조/영해보호활동을 위해 정지궤도 공공복합 위성 개발 사업 참여 요구('19. 10월)
- '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19.11월)
-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시행 확정('20.6월, B/C 0.57, AHP : 0.701)
- 국가우주위원회 심의·의결 및 사업계획 확정('21.12)
- '21년도 사업 시행계획 확정('21.2,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 추진위원회

- (총괄)주관연구기관 공모·선정 및 사업 착수('21. 4월)
- 공공복합 위성 통신탑재체 SDR(System Design Review) 실시('22. 1월)
- 공공복합 위성 본체 SDR(System Design Review) 실시('22. 4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4,118억원(해경청 472억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	-	1,575	5,342	7,500

- 기 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다부처사업 : 과기정통부, 환경부, 국토부)
- 사업 수혜자 : 국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국민(어업인 등 해양종사자, 위성·통신 관련분야 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지궤도공 공복합통신 위성개발	출연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7,50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1조(전문기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2) IoT기반함정정비통합관제플랫폼개발(R&D)(해경청) (7239-6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17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IoT기반함정정비통합관제 플랫폼개발(R&D)(해경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IoT기반함정정비 통합관제플랫폼 개발(R&D)(해경청)	1,040	1,560	1,560	2,080	2,080	520	3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효율적인 함정정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기반의 함정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에 투입되는 국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등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의 성과를 국방연구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민·군기술협력사업) 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군기술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 나.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가장 우수한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사업 다.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방위사업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등 민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와 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라.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비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2019. 3. ~ 4. : '21년도 민·군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수요접수
- 2019. 6. ~ 8. : 사전기획연구 대상과제 선정 및 사전기획연구 추진
- 2019. 9. : 다부처특위, 사전기획연구 평가 및 공동기획 대상사업 선정
- 2019. 9. ~ 12. : 공동기획연구 추진
- 2019. 12. : 민·군기술 분야별 전문위, 공동기획연구결과 평가
- 2020. 2. : 다부처특위, '21년도 민·군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최종선정
- 2021. 4. : 연구개발기관 선정 공고
- 2021. 7.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사업 착수
- 2021. 8. ~ 12. : PMO 구성 및 WBS 수립, 개발범위·내용 구체화
- 2022. 1. ~ 2. : 정비창 대상 연구개발 관련 인터뷰 (현장 요구사항 정의)
- 2022. 3. ~ 4. : 2년차 ('22년) 세부 기술개발 계획서 작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1 ~ 2025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	-	1,040	1,560	2,080

- 기타: 1개 내역사업 1개 과제 구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주관) 국방부, (참여) 해양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민군협력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국방부·해양경찰청 정비창, 민간 조선소, 연구기관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IoT기반함정 정비통합관제 플랫폼개발	출연	민군협력 진흥원	2,00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1조(전문기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 18조의2(민군기술협력전담기구의 업무)
기획평가 관리비	출연	민군협력 진흥원	80	100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3) 해양사고신속대응군집수색자율수중로봇시스템개발(R&D) (7239-61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18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해양사고신속대응군집수색자 율수중로봇시스템개발(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해양사고신속대응 군집수색자율수중 로봇시스템개발(R&D)	2,132	4,600	4,600	7,180	7,180	2,580	56.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양사고 시 신속한 수중 탐색용 군집형 자율무인잠수정 및 운용시스템 개발로 해양 사고 신속대응 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

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및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 ② 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및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③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의 장은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구조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1차 기획) 해양수산부 주관 ‘해양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의 후속 사업에 대한 기획연구(‘17.5~’18.3)
- (2차 기획) MOVE 4.0(Maritime Operative Vehicle Equipment 4.0) 로드맵의 수립과 사업의 대표 과제인 ‘해양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SOS(Safe Ocean Service)해양안전로봇사업’에 대한 상세 기획 수행(‘18.8~’18.12)
- (3차 기획) ‘해양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SOS(Safe Ocean Service) 해양안전로봇사업’의 내역사업 중 군집수색 자율 수중로봇 시스템에 대한 상세 기획 수행(‘19.12~’20.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1 ~ 2025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	-	2,132	4,600	7,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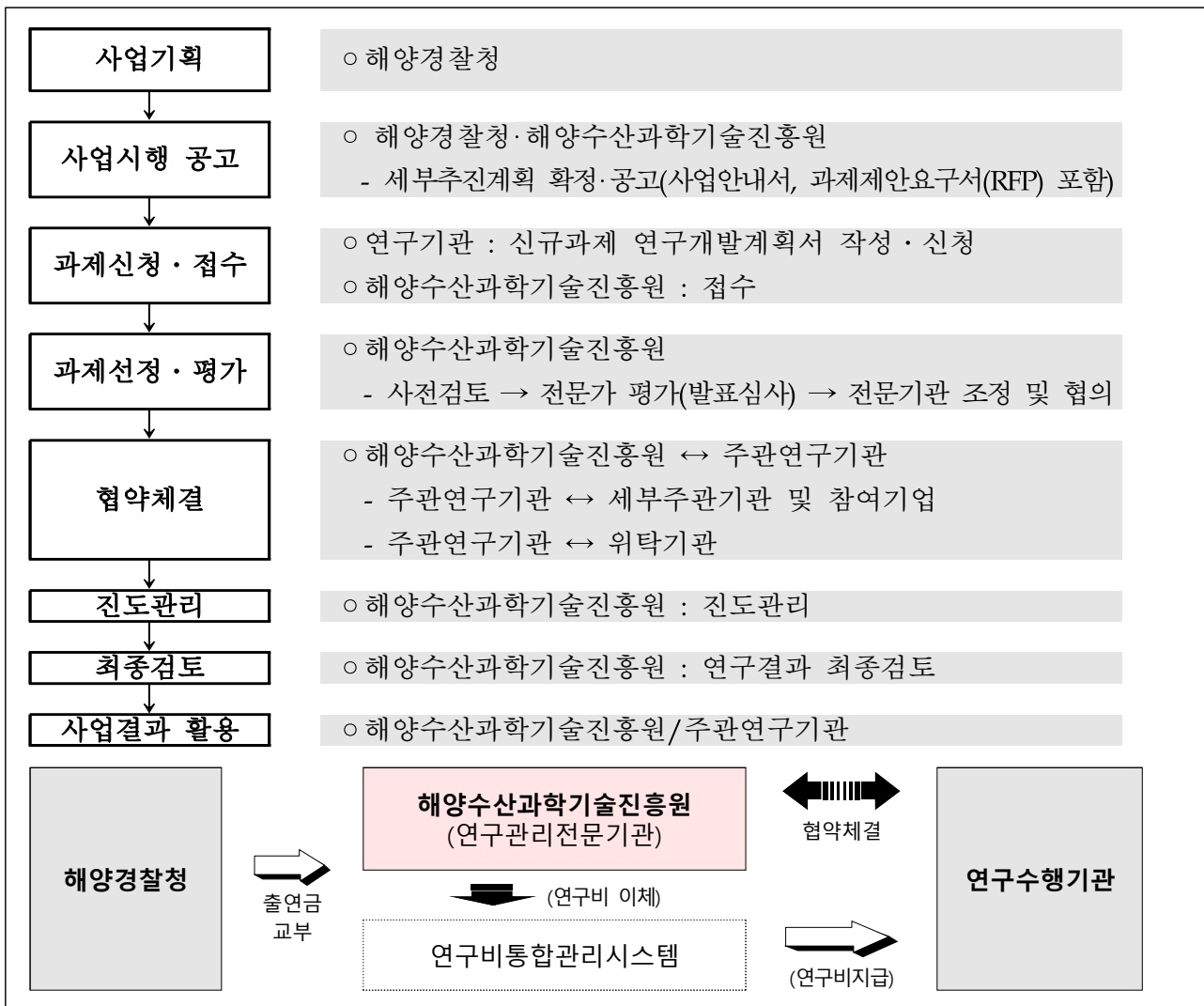
- 기타 : 1개 내역사업 1개 과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양관련종사자, 전국민, 연구기관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군집수색자 율수중로봇 시스템개발	출연	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	7,18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1조(전문기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4) 해양경찰현장맞춤형연구개발(오션랩)(R&D) (7239-61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연구센터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19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해양경찰현장맞춤형 연구개발(오션랩)(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해양경찰현장맞춤형 연구개발 (오션랩)(R&D)	512	869	869	144	144	△725	△8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불법외국어선 단속강화) 해양경찰 단속요원의 해상진압복, 보호장비, 보호헬멧, 생체
알림 장비 등에 대한 디자인, 소재 및 정보통신(통신 및 센서 등) 기술개발 지원
- (구조역량 및 대민서비스 향상) 해상구조 작업 등에 사용되는 함정 배수펌프, 선상
작업복, 탐조등 및 조명탄 등에 대한 해상환경에 적합한 성능개선 기술개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를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법」 제16조(해양안전 확보 노력)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운·어로·자원 개발·해양과학조사·관광 및 레저 활동 등을 통해 해양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발생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대응을 위하여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지휘·통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보장 및 사고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술, 해양구조방식 등의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3조(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4조(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 사용자 참여형 연구개발 제도(리빙랩)」 기획연구 진행(‘20.4)
 - 리빙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 및 목표 수립, 지속가능한 제도적 장치 개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구조 설계 등
- 「해양경찰 현장맞춤형 연구개발(오션랩)」 신규과제 진행(‘21.4)
 - 2개 내역사업, 8개 과제로 해양경찰 임무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연구진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1년 ~ 23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512	869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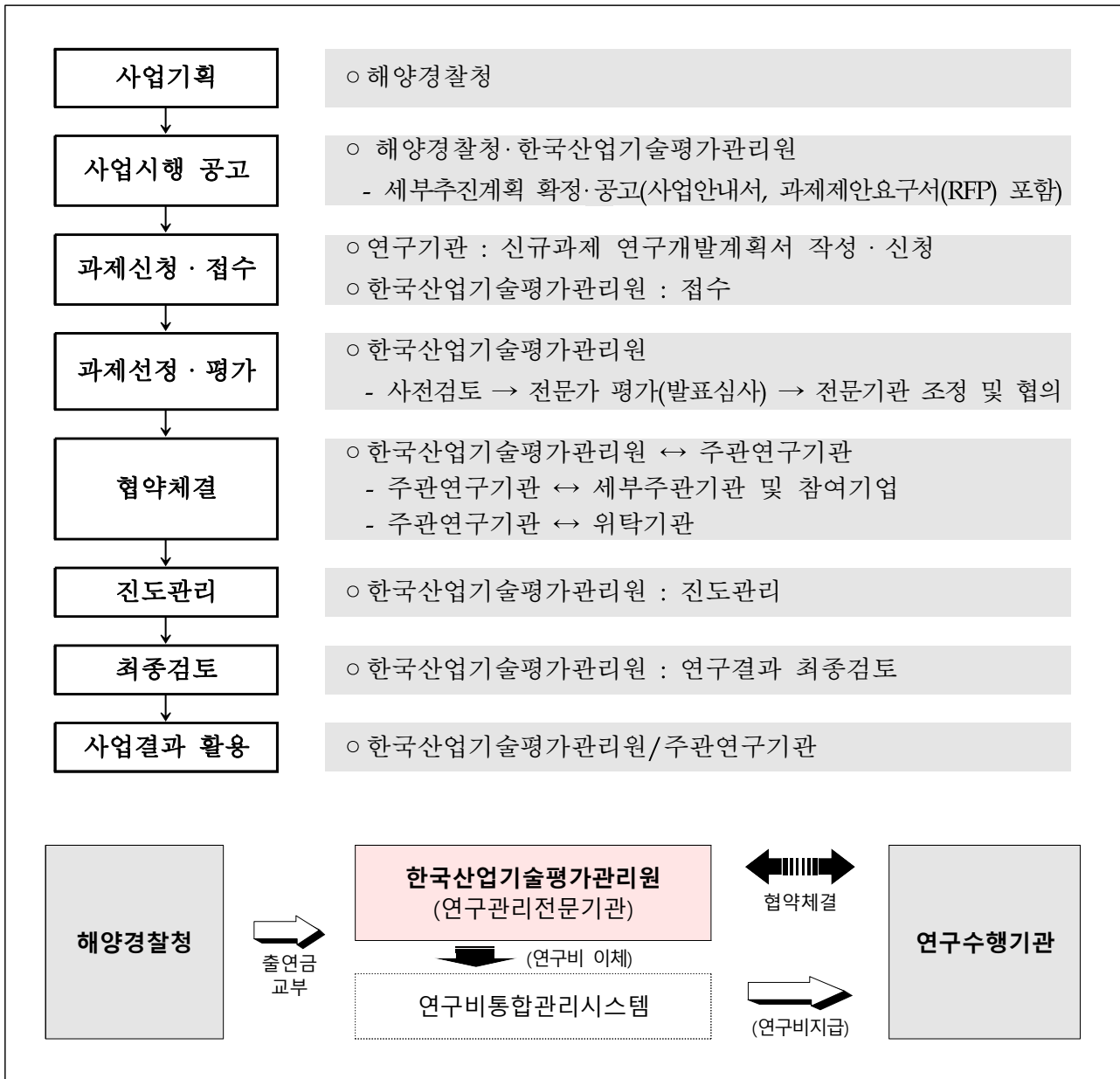
- 기타 : 2개 내역사업 2개 과제('23년도 기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현장요원) 및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불법외국어선 단속강화	출연	한국산업 기술평가 관리원	74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1조(전문기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구조역량 및 대민서비스 강화	출연	한국산업 기술평가 관리원	7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1조(전문기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5)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R&D)(해경청) (7239-62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21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 (R&D)(해경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R&D)(해경청)	-	4,200	4,200	10,200	5,100	900	2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성 기반의 광역해양정보 상황인식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관측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해양주권과 한반도 주변해역의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2(우주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항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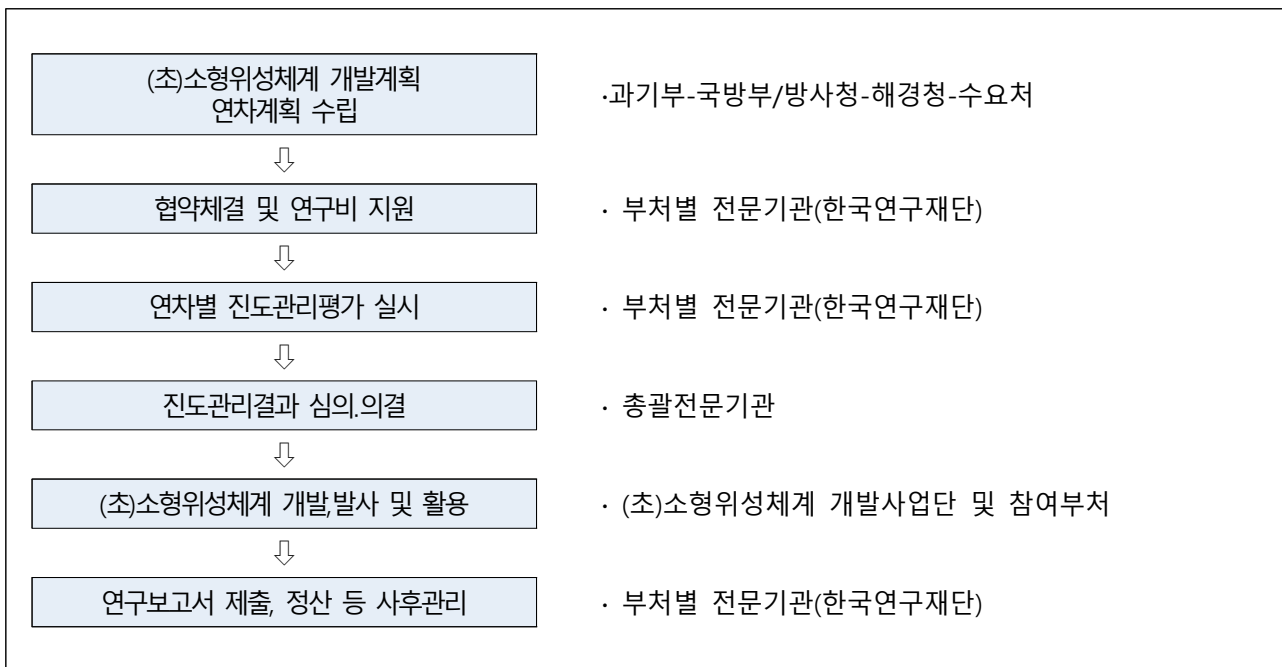
- 「광역해양정보 상황인식체계 위성」 개발 기획연구('20.1~9)
- 위성 기획자문위원회의('20.2~4)
- 위성 설계사양 협의 및 위성사업 추진전략 논의('20.4)
- 「광역해양정보 상황인식체계 위성」 개발 기획연구 중간보고회('20.7)
- '20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20.11)
 - * 「광역해양정보 상황인식체계\ 위성 개발 사업」 다부처<해경청, 과기부> 사업
- 다부처<해경청, 과기부, 국방부/방사청, 수요처> 위성사업 추진 결정('20.12)
- '20년 4차 제출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사업 철회('21.1)
- '21년 1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21.2)
- '21년 1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21.6)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 점검·확정 예정(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14,223억원(해경청 1,750억원)
- 사업기간 : '22 ~ '30
- 사업규모 : 위성시스템 개발, 지상시스템 개발(위성 관제/수신/처리 시스템), 영상 활용시스템 개발(위성정보 활용 시스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등 다부처 참여(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 *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수요처
- 사업 수혜자 : 위성관련 연구기관·기업, 해경청 등 국가, 공공기관,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출연	한국연구재단	5,10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1조(전문기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6) 지능형해양사고대응플랫폼구축(R&D) (7239- 62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22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지능형해양사고대응 플랫폼구축(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지능형해양사고대응 플랫폼구축(R&D)	-	2,150	2,150	4,556	4,556	2,406	111.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양사고시 표류예측 기반 수색범위, 현장 해양기상, 가용 수색구조세력 등 수색 구조 환경조건 정보를 제공하여, 수색구조 기관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고, 최적화된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능형 해양사고 대응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 부유물 표류경로 예측기술 개발, 부유체 원격탐지 기술개발, 스마트 수색전략 수립 지원 기술 개발, 현장 모니터링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 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기획연구 착수회의 및 사업방향·주요내용 기획('21. 3~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전 기획컨설팅 참가('21.4.13)
- 과학적·체계적 수색구조계획 수립지원을 위해 AI 기반 해양수색구조 의사결정 지원 통합시스템(S/W, H/W) 및 해양표류체 원격탐지에 대해 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구성·보안한 RFP 도출 확정('21.9~'21.12)
- 지능형 해양사고 대응 플랫폼 구축사업 신규과제(AI기반 해양수색구조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선정기관(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연구원) 확정('22. 4.1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2년~202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	-	-	2,150	4,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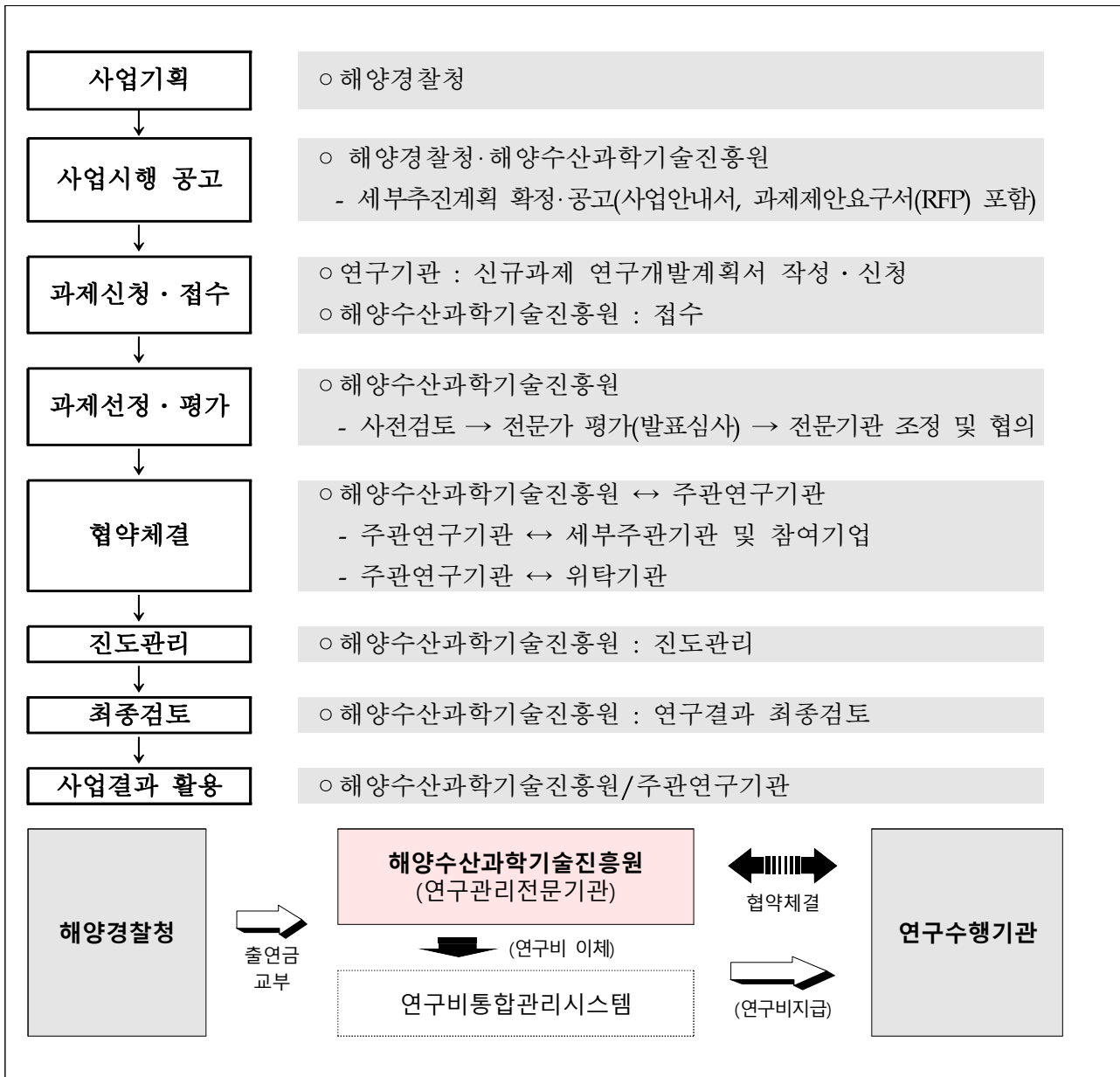
- 기타 : 1개 내역사업 1개 과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전문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양관련 종사자, 전 국민, 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 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AI기반 해양수색구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4,556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7) 가상융합기술기반재난안전대응교육·훈련플랫폼기술개발(R&D)(해경청) (7239-62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23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가상융합기술기반재난안전대응 교육훈련플랫폼기술개발(R&D) (해경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가상융합기술기반 재난안전대응교육 훈련플랫폼기술 개발(R&D)(해경청)	-	-	-	1,850	1,850	1,85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양경찰 및 재난안전 종사자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및 재난관리 직무수행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상융합기술 기반 초실감 맞춤형 교육훈련 플랫폼 기술개발
- 복잡·다양화되는 해양재난사고 대비 가상융합기술 기반 실제와 유사한 교육·훈련의 주기적·

반복적 실시하기 위해 첨단기술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개발, 콘텐츠 개발(불법 중국어선 단속, 전복선박 탈출유도), AI평가 관리시스템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법 제19조(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 해양경찰청장은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체계를 발전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국정과제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 주변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해양경비력을 강화하고, 잠정조치수역 등 원거리 해역까지 어업권 및 국민안전 보호로 해양영토주권 수호

○ 국정과제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 복잡·대형화하는 재난에 신속·과학적으로 대응과 실질적인 재난 손실·피해 복구지원 등 국민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AI·데이터를 활용한 신속·과학적인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국정과제 선정

○ '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 10대 중점투자방향으로 Data.Network.Ai 기반의 디지털 경제 전환 촉진을 선정하고 XR·5G 기반 실감콘텐츠 핵심기술을 개발 혁신서비스 창출 지원, 공공인프라 디지털화를 제시

○ '20년 관계부처 합동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

- 코로나19로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 및 XR기술의 경제성장 동력원 예상에 따라 XR활용 고도화 및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 발표

○ 「2023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2.3.)

- 초실감 메타버스 콘텐츠·미디어 R&D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XR 서비스 확장 및 가상융합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청 미래 발전 전략(비전2030)」 연구 통한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한 교육 훈련체계 도입 검토('19)
- 재난안전 아카데미 통합 플랫폼 개발 사업 기획보고서('21.4)
- 첨단기술기반 해양경찰 교육훈련 플랫폼 기술개발 기획연구('21.6.)
- 현장대응력 강화 위한 해양경찰 교육훈련 플랫폼 개발기획연구('21.1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3 ~ 2027(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전 국민, 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가상융합기술 기반재난안전 대응교육훈련 플랫폼 기술개발	출연	한국산업 기술평가 관리원	1,85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1조(전문기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8) 웨어러블기반해상화재·화학사고대응기술개발(R&D)(해경청) (7239-62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24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웨어러블기반해상화재·화학사고대응기술개발(R&D)(해경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웨어러블기반해상화재·화학사고대응기술개발(R&D)(해경청)	-	1,842	1,842	2,422	2,422	580	3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상 재난현장 대응요원의 안전 확보 및 현장위험의 실시간 분석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현장 대응장비 및 이를 활용한 재난현장 안전관리 통합관제시스템 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웨어러블 기반 재난현장 대응기술” 기획연구 용역추진(‘21.2.~)
-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협의체」 실무위원회에 ’22년 부처 협력사업으로 안전상정 및 협의(‘21.3.12.)
- 부처별 개발 수요 반영을 위한 신규사업 기획 협의(3회)(‘21.3~4월)
-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협의체」 에서 부처 협력사업으로 선정(‘21.4.23.)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2년 ~ ’25년(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	-	-	1,842	2,42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다부처사업 : 해양경찰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소방청(현장요원), 관련연구자, 해양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웨어러블기반 해상화재 화학사고 대응기술개발	출연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2,422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1조(전문기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9) 탄소중립해상환경변화에따른방제대응기술개발(R&D) (7239-62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25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탄소중립해상환경변화에따른 방제대응기술개발(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탄소중립해상환경변화에 따른방제대응기술개발 (R&D)	-	-	-	1,400	1,400	1,40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계적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해사여건 변화(친환경연료 추진 선박 도입 확대 등) 로 발생하는 新유형 복합해양사고(화재·폭발·해양오염 동반)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방제 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상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가긴급방제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추진경위

-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 환경사고 위기대응 기술개발 기획연구(‘20.9.~’20.12)
- 방제분야 신규사업개발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20.8.10~8.18)
- 방제기술트리 등 기술수요에 대한 분석 중간회의(‘20.11.3)
- 우선추진 후보과제 분석 및 다부처 추진과제 검토(‘20.11.17)
- 「탄소중립 해상환경 변화에 따른 방제대응 기술 개발」 기획연구 완료(‘21.12.17.)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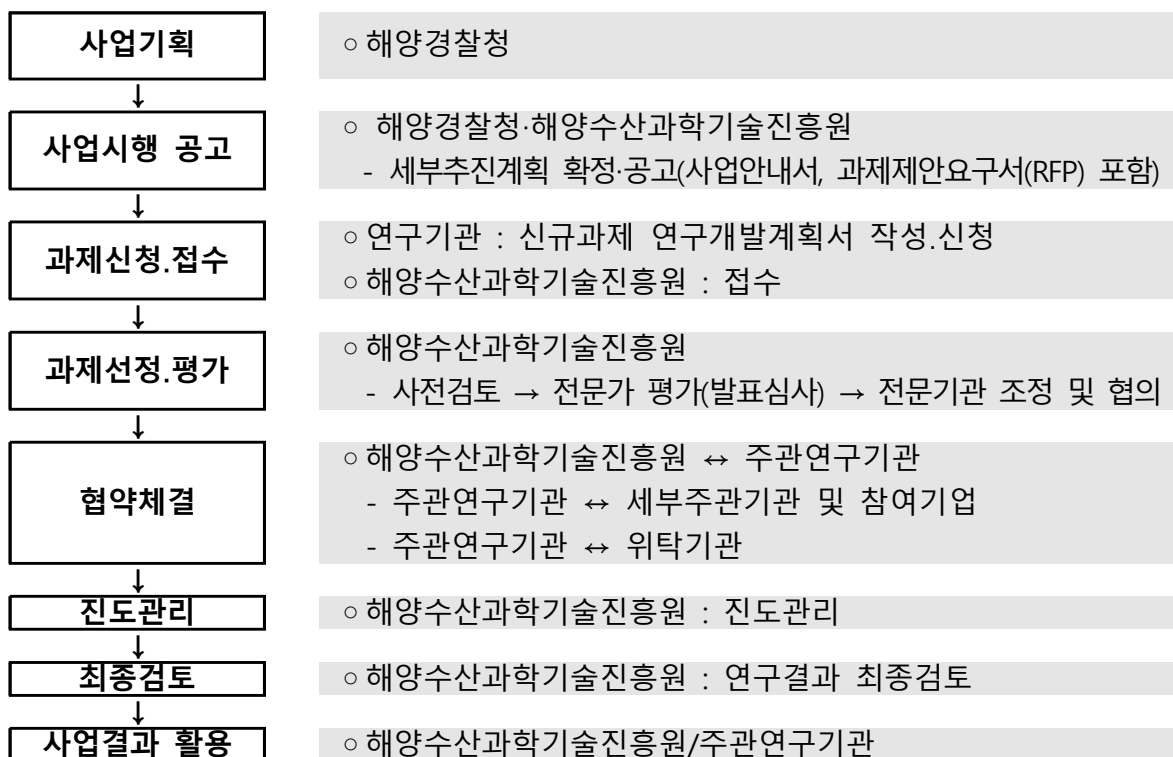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3 ~ '27년(총 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관련 연구자, 해양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탄소중립해상환경 변화에따른방재 대응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 진흥원	1,40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1조(전문기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50) 수상레저기구안전인증기술기준개발(R&D) (7239-62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26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수상레저기구안전인증기술기준개발(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수상레저기구안전 인증기술기준개발 (R&D)	-	-	-	1,700	1,700	1,70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인증 기술기준 마련
- 국내 표준 마련을 통한 제조단계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재난안전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전문가 자문 및 수상레저기구 안전인증 기술개발을 위한 기획연구('21.2~5월)
- * 1개 내역사업, 1개 과제에 주요개발요소 및 개발 로드맵 마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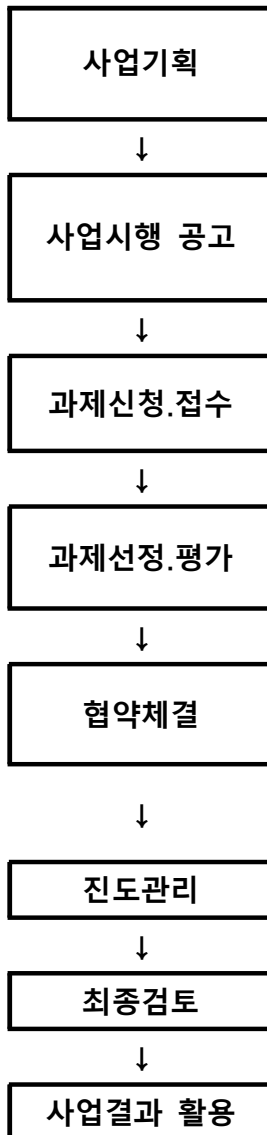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3년 ~ '26년(총 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활동자, 수상레저기구 제조 및 수입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상레저기구안전인증기술기준 개발	출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70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3) 사업 집행절차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전문기관 조정 및 협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 주관연구기관 ↔ 위탁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진도관리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주관연구기관

사 업 명						
(51) 해양경찰위성활용기술개발(R&D) (7239-62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28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해양경찰위성활용기술개발(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해양경찰위성활용 기술개발(R&D) (해경청)	-	-	-	4,900	2,710	2,71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경 3대 위성(관측·통신·수색구조)체계의 유기적인 통합운용과 융합활용을 위한 해양경찰 핵심활용기술 개발로 불법선박 예측·감시 등 현장 위성활용 역량 고도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2(우주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항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개최('21.8.6.)

*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 '23년 연구개발(R&D) 신규사업 선정

- 「(초)소형 관측위성 현업 실용화 시스템 구축」 기획연구용역('21.5.~'22.1.)

* 용역 수행업체 : 텔레픽스

-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기술수준과 역량진단 설문조사('21.7.~9.)

* 해경내부 직원, 자문위원(전문가), 항공우주 분야 산학연 및 산하기관 관계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3 ~ '27

- 사업규모 : 위성체계통합운용시스템, 위성체계 간 융합활용기술, 기존체계(VTS 등) 연동 위성정보 현업활용서비스시스템, 현업 맞춤형 초소형위성자료처리 및 실용화 서비스시스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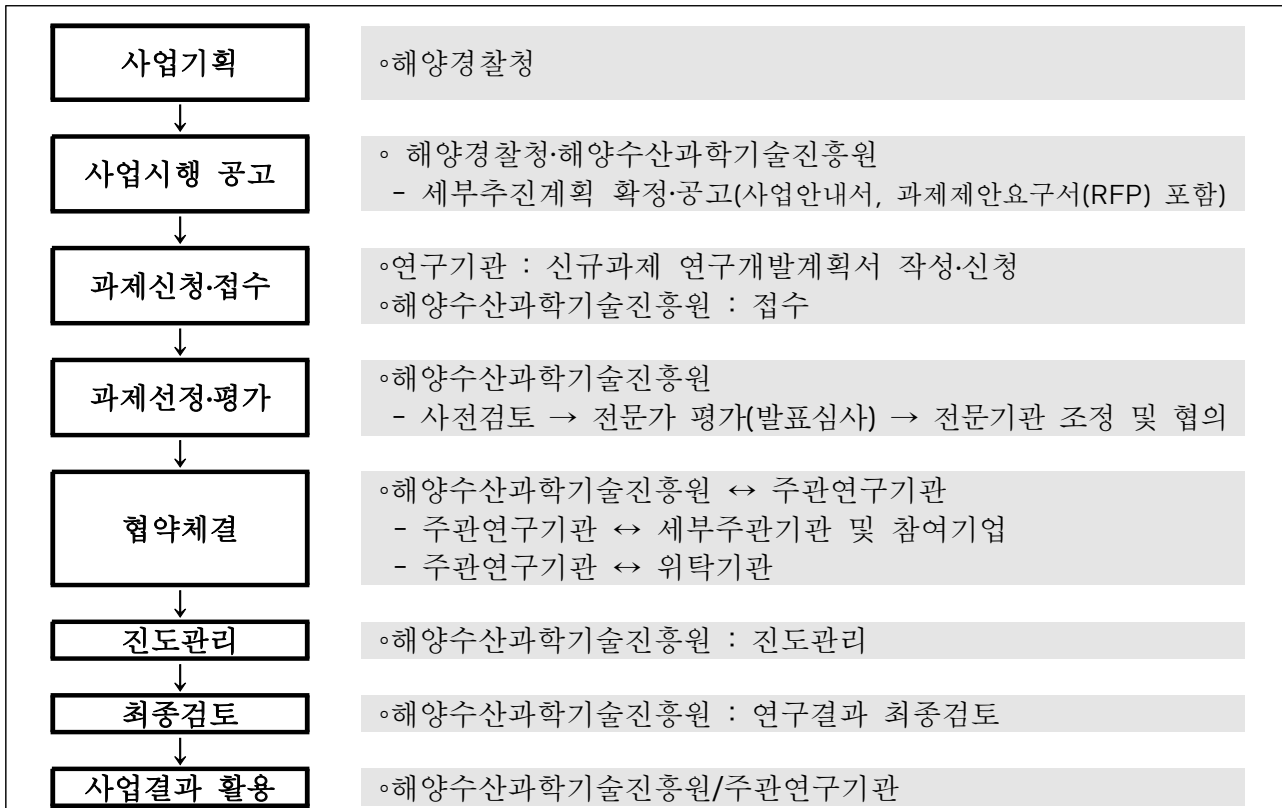
- 사업시행주체 : 미정(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위성관련 연구기관·기업, 해경청 등 국가, 공공기관,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경찰위성활용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2,71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1조(전문기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52) 정책연구개발(R&D) (7239-6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5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정책연구개발(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정책연구개발(R&D)	171	242	242	342	342	100	4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해양경찰청 현안업무 관련 연구용역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9조(정책연구)

② 추진경위

- '17. 7. 26 : 정부조직법 개정(해양경찰청 신설)에 따라 '18년 예산부터 국민안전처에서 사업 분리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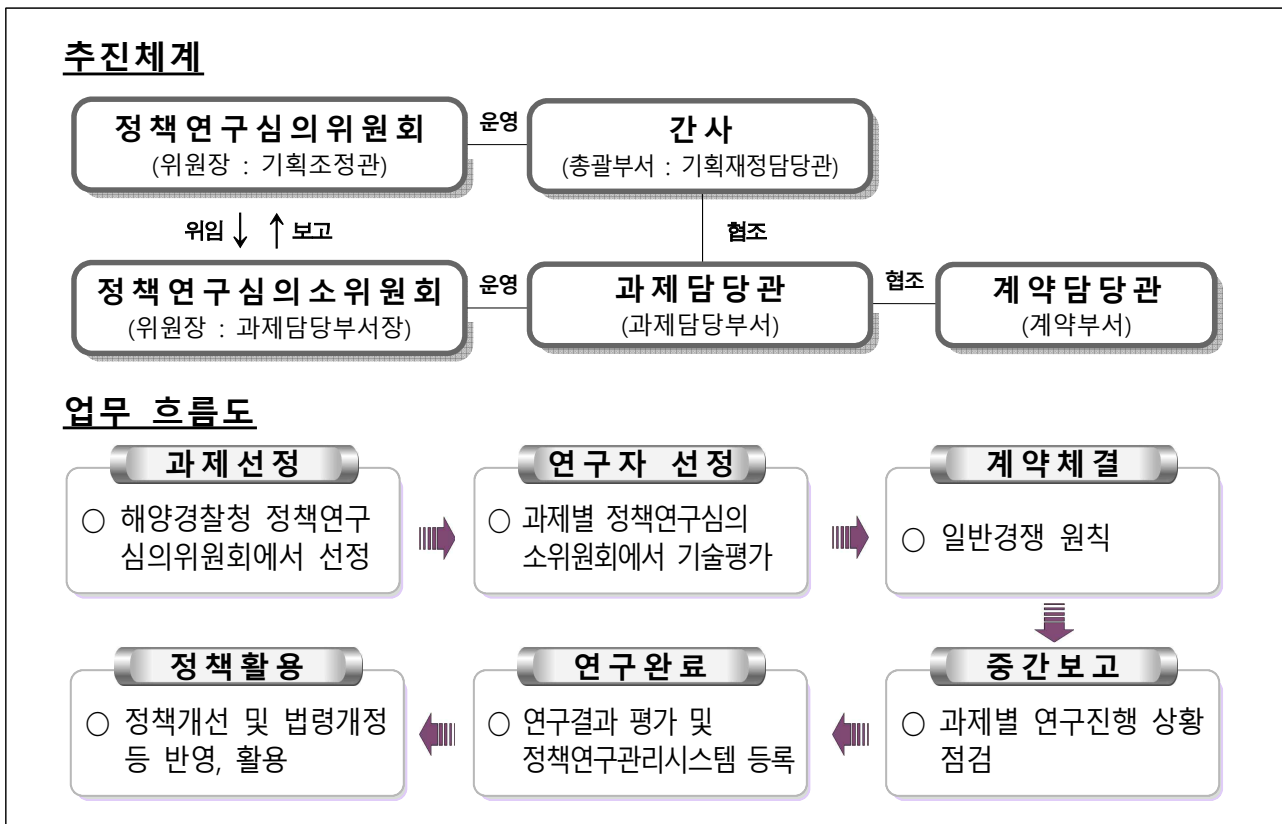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연구관련 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53) 본부인건비 (7201-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1	10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인건비	본부인건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본부인건비	78,829	85,926	85,858	92,219	92,219	6,293	7.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경찰관, 일반직 등) 보수 지급
-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보수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 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보수의 지급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 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 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도 중에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①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와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중 제46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7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의무경찰에게 준용한다.
② 의무경찰의 보수, 복무, 퇴직, 면직, 휴직 및 직위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의무경찰대의 대원 중 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인건비 지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67,037	68,597	79,073	85,858	92,219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 예산작성 → 사업계획수립 → 사업진행 → 집행결과분석

사 업 명
(54) 지방관서인건비 (7201-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1	101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인건비	지방관서인건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지방관서인건비	743,778	777,118	776,096	831,516	800,911	23,793	3.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경찰관, 일반직 등) 보수 지급
-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및 교육생 보수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보수의 지급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 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 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도 중에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①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와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중 제46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7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의무경찰에게 준용한다.
② 의무경찰의 보수, 복무, 퇴직, 면직, 휴직 및 직위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의무경찰대의 대원 중 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신입 교육생 및 의무경찰 인건비 지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708,193	723,495	770,554	777,118	800,911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 예산작성 → 사업계획수립 → 사업진행 → 집행결과분석

사 업 명						
(55) 정비창인건비 (7201-1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비창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1	102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인건비	정비창인건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정비창인건비	14,478	15,263	15,240	16,331	15,577	314	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양경찰청정비창 소속공무원(경찰관, 일반직) 보수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 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보수지급의 방법) 보수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추진경위

- '00년부터 정비창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되면서 운영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5,201	14,332	15,145	15,240	15,577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정비창)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개인별 지급

사 업 명
(56) 본부기본경비(총액) (7202-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0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본부기본경비(총액)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본부기본경비(총액)	9,444	10,369	10,369	10,803	10,803	434	4.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양경찰청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시키고, 보조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경찰청 공무원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1조(보수)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예산 범위에서 공무원 근로자 등의 보수를 별도로 정하며, 공무원 근로자 등의 봉급, 수당 등 관련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 보수표를 정한다.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2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5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1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이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하부조직) ① 해양경찰청에 운영지원과·경비국·구조안전국·수사국·국제정보국·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3조(자체감사기구의 운영) ① 청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7조(교육훈련 실시 의무)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 및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추진경위

- 내무부 소속 「해양경찰대」로 창설('53.12)
-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개편('91.7)
-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승격('96.8)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조직 개편('14.11)
-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변경('17.7)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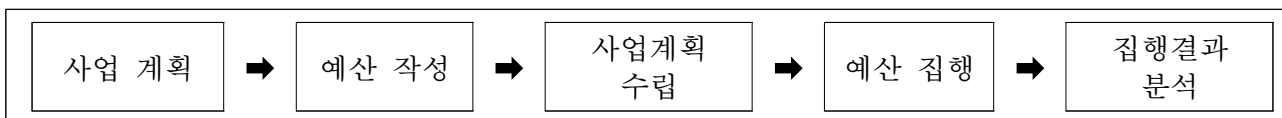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8,604	8,954	9,458	10,369	10,80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 및 일반직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57) 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7202-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01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6,266	6,554	6,554	6,620	6,580	26	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② 추진경위

-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20개 해양경찰서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종 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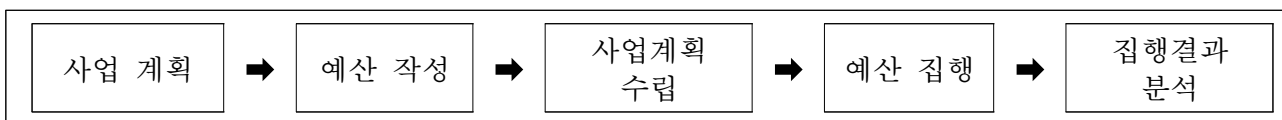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5,983	6,332	6,350	6,554	6,58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 및 일반직 공무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58) 지방관서운영(총액) (7202-2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02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지방관서운영(총액)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지방관서운영(총액)	1,393	1,436	1,436	1,450	614	△822	△57.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보수 및 직원 직무수행경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경찰청 공무원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1조(보수)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예산 범위에서 공무원 근로자 등의 보수를 별도로 정하며, 공무원 근로자 등의 봉급, 수당 등 관련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 보수표를 정한다.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2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5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II-1-3항(상용임금·일용임금)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및 부담금을 고용부담금(320-09목)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청 소속 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환경미화, 사무직 등)의 보수와 경찰관 및 일반직의 특정업무경비 등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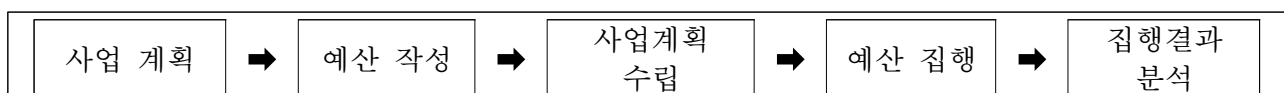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302	1,414	1,417	1,436	614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 및 일반직 공무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59) 교육원기본경비(총액) (7202-2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03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교육원기본경비(총액)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교육원기본경비(총액)	486	533	533	538	433	△100	△18.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우수 해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운영지원
- 교육운영 지원을 통한 교육품질의 향상 및 교육 만족도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인재개발)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 경찰공무원법 제22조(교육훈련)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7조(교육훈련 실시 의무)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교육원 교육훈련의 구분)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추진경위

- '04. 1. 29. 해양경찰학교 직제신설 공포(대통령령 제18260호)
- '06. 1. 신임·기본과정 교육운영 일원화(경찰종합학교→해양경찰학교 이관)
- '08. ~ 경정·경감 기본교육 이관(경찰대학→해양경찰학교)
- '13. 11 '해양경찰학교'에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명칭 변경(대통령령 제25244호)
- '13. 11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의거 해양경찰교육원 신축 이전(천안→여수)
- '14. 3. 31.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준공
- '14. 11. 19.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변경
- '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472	490	490	533	433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교육 계획 수립 → 교육시행 → 교육결과에 따른 집행 계획 수립 → 예산집행

사 업 명						
(60) 정비창기본경비(총액) (7202-2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비창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04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정비창기본경비(총액)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정비창기본경비(총액)	453	453	453	458	458	5	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양경찰청비창 수리시설 및 주요장비의 효율적 지원운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③ 해양경찰청장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을 둔다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청 보유합정 수리 전담기관인 정비창의 기준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452	452	454	453	458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정비창)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경합정 승조원, 해·수산 관련 종사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 |
|--------------------------------------|
| - 소속기관 기본경비로서 세출예산집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 |
|--------------------------------------|

사 업 명						
(61) 본부기본경비 (7202-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5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본부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본부기본경비	2,742	3,705	3,492	3,780	3,780	75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양경찰청 보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하부조직) ① 해양경찰청에 운영지원과 · 경비국 · 구조안전국 · 수사국 · 국제정보국 · 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장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7조(수당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① 공무원은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 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7조(교육훈련 실시 의무) 해양경찰 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 및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추진경위

- 내무부 소속 「해양경찰대」로 창설('53.12)
-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개편('91.7)
-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승격('96.8)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조직 개편('14.11)
-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변경('17.7)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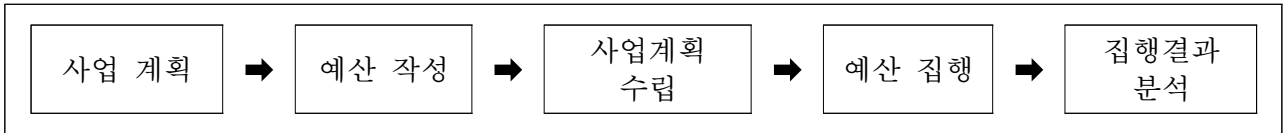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2,654	3,069	3,596	3,705	3,78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 및 일반직 공무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62) 지방관서기본경비 (7202-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51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지방관서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지방관서기본경비	29,272	23,264	22,759	23,497	22,167	△1,097	△4.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② 추진경위

-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20개 해양경찰서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종 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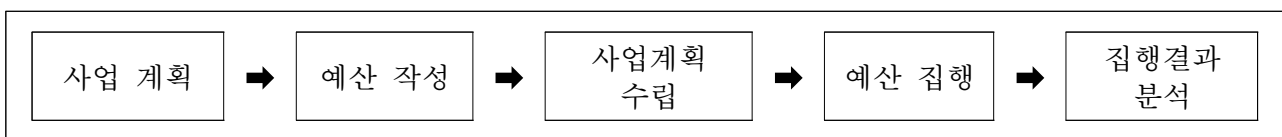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26,732	28,503 (28,176)	29,059	23,264 (22,759)	22,167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63) 교육원기본경비 (7202-2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52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교육원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교육원기본경비	981	1,017	983	1,094	1,094	77	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우수 해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운영지원
- 교육운영 지원을 통한 교육품질의 향상 및 교육 만족도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인재개발)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 경찰공무원법 제22조(교육훈련)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7조(교육훈련 실시 의무)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교육원 교육훈련의 구분)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추진경위

- '04. 1. 29. 해양경찰학교 직제신설 공포(대통령령 제18260호)
- '06. 1. 신임·기본과정 교육운영 일원화(경찰종합학교→해양경찰학교 이관)
- '08. ~ 경정·경감 기본교육 이관(경찰대학→해양경찰학교)
- '13. 11 '해양경찰학교'에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명칭 변경(대통령령 제25244호)
- '13. 11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의거 해양경찰교육원 신축 이전(천안→여수)
- '14. 3. 31.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준공
- '14. 11. 19.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변경
- '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013	1,013	998	983	1,094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 |
|---------------------------------------|
| - 소속기관 기본경비로써 세출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
|---------------------------------------|

사 업 명						
(64) 정비창기본경비 (7202-25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비창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53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정비창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정비창기본경비	11	11	11	11	11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양경찰 정비창 소요 기본성 경비로 원활한 관서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③ 해양경찰청장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을 둔다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청 보유함정 수리 전담기관인 정비창의 기준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1	11	11	11	11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정비창)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경함정 승조원, 해·수산 관련 종사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소속기관 기본경비로서 세출예산집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

사 업 명						
(65) 해양오염예방활동 (43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070	075
명칭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33	300
명칭	해양오염관리	해양오염방제	해양오염예방활동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해양오염예방활동	4,590	5,397	5,264	5,581	5,449	52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제장비 및 물품 확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3개 광역방제지원센터 기자재 확충 및 해양경찰서 운용 중인 노후 방제장비 등을 대체하는 사업임
- (방제 및 예방활동 지원) 방제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해양환경 보전 활동 추진을 위해 본청, 지방관서(지방청, 해양경찰서)의 방제·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 (해양오염방제 역량 강화) 신속·효율적인 방제 조치를 위해 체계적인 방제훈련 추진과

시설장비 유지보수, 해양오염사고 처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거법령)

- 정부조직법 제43조의 2항(해양에서의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④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의무자가 부담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③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2. 제70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을 하는 자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①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외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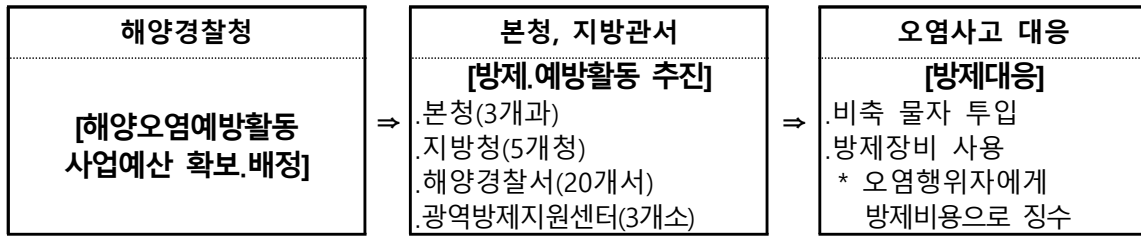
- '00. 1월, 국가방제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 '00. 2월, OPRC협약(기름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발효
- '08. 7월 국무총리실 특정과제 이행계획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개선”
- '08. 11월,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시행
- '14. 11월, 국민안전처(舊 해양경찰청) 조직 변경
- '17. 7월, 해양경찰청 조직변경, 오염방제 총괄지휘하고 지자체가 해안방제조치 시에 방제장비·자재를 지원하도록 법 개정·시행에 따라 해안방제 지원기반 마련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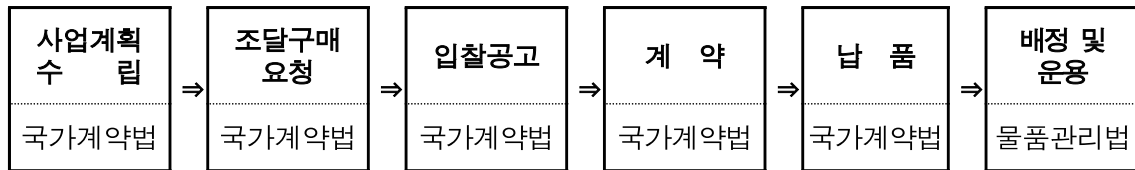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해양수산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예산 집행 체계



○ 방제자원 구매 체계



※ 방제물자는 광역방제지원센터에 비축 또는 해양경찰서에 분산 배치하여, 방제 대응에 활용(사용된 물자는 방제비용으로 징수하여 국고세입)

사 업 명
(66) 해양화학사고대응역량강화 (43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60	해양오염방제국		070	075
명칭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33	301
명칭	해양오염관리	해양오염방제	해양화학사고대응역량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해양화학사고대응역량강화	619	756	729	870	870	114	1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해양화학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및 해양환경 보호
- (사업내용) 해양에서의 위험·유해물질(HNS) 사고 대비·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용장비·자재를 확보하고, 현장 대응요원의 교육·훈련 등 활동을 지원
 - (사고대응장비확보) 동 내역사업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가스탐지기, 소석회살포기, 제독기 등 장비를 확보하여 전국 27개 소속관서에 지원하는 것임

- (사고대응자재 확보) 동 내역사업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알콜형포소화약제(내알콜포), 화학보호복, 화학마스크, 방폭안전용품 등 자재·약제를 확보하여 전국 27개 소속관서에 지원하는 것임
- (화학사고대응요원활동지원) 동 내역사업은 전국 27개 소속관서의 교육·훈련을 위해 현장 대응요원을 대상으로 장비유지·수선 등 활동 지원하는 것임
- ※ **위험·유해물질(HNS :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 기름을 제외한 독성, 폭발, 화재 위험 물질로 유출시 인명과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물질(ex. 벤젠, 톨루엔, 자일렌, 황산, 질산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43조(해양수산부)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상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④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 국가긴급방제계획 제3장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제12조(방제자원의 확보 및 긴급동원태세 유지) ① 해양경찰청장과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제조치에 필요한 방제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6. 12월, HNS 국가/지역 방제계획 수립·시행(국가 및 3개 해역)
- '08. 1월, OPRC-HNS 의정서 가입, 국내발효('08. 4. 11)
- '08. 2월, 해양환경관리법상 HNS국가긴급방제실행계획 수립·시행 규정
- '08. 4월,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HNS 지정 고시(68종)
- '08. 12월, HNS 국가/지역방제계획 수립 완료('06년~'18년, 19해역)
- '09. 4월, 기름 중심의 국가/지역 긴급방제계획에 HNS를 포함하여 개정
 - 해역특성 정보, 사고위험평가, 방제조치 계획, 방제자원 동원 등 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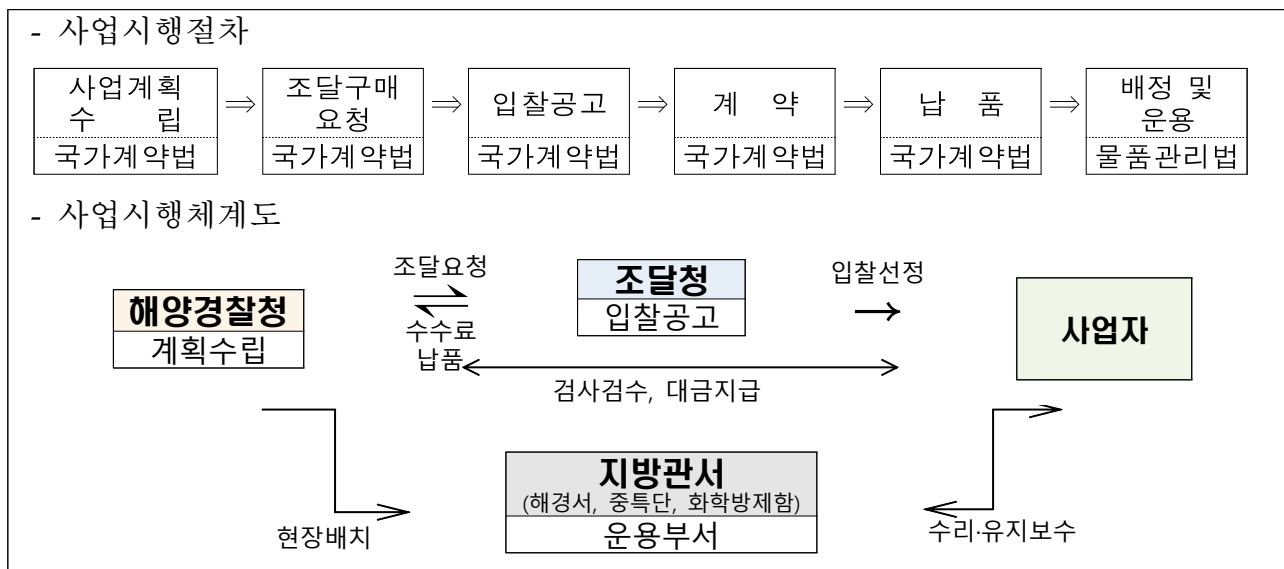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520	520	620	729	870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67) 방제정건조 (43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070	075
명칭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34	300
명칭	해양오염관리	방제정 건조	방제정 건조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방제정건조	10,606	15,300	15,300	26,609	25,689	10,389	6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후·신규 방제정 건조) 환경 친화적 방제정으로 건조
 - (사업목적) 기름 및 해상화학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유회수기, 오일 펜스 등 방제장비를 탑재한 방제 전용 선박 건조
 - (사업내용) 방제정을 환경 친화적 방제정으로 대체 건조, 복합 해양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 오염물질 감축 및 친환경 선박 시장 선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거법령)

- 정부조직법 제43조의 2항(해양에서의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
 -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 ④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의무자가 부담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97년, '국가방제제도개선 및 방제능력 확충방안 연구'를 통하여 국가방제능력 확보목표를 2만톤으로 설정
- '07년, 해양오염 국가방제능력 확충계획 보완
- '08년, 총리실 주관,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평가시 개선과제로 대형 방제정 필요성 제기
- 선령 20년이 경과된 노후 방제정 교체로 선박 안전성 확보
- '14년, 여수·부산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제기된 방제정 부족의 문제점 해결 추진
- '15년, 부산 화학물질운반선('13년, 마리타임메이지호) 충돌·화재사고 시 현장 진입 및 화재진압의 어려움에 따른 전용 선박도입 추진
- '16년 '해양오염방제장비 중장기 확보계획' 수립, 방제정 확보 목표 정립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해양수산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